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김민선(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연구원)

연구기간 : 2016년 7월 ~ 12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우리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이라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정책 실행 도구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에 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대상 과제를 확대하여 2015년에는 385개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에서는 그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시행 초기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추진 체계 등 제도 자체의 발전 성과와 제도 도입으로 인한 궁극적 성과인 성평등 정책 실현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성과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틀을 마련하는 등 분석 방법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수이지만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혜 순**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을 경과하고 있음. 그동안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와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확대 등 양적 성과는 이루었으나, 성평등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 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9.15)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책 개선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음(정영태, 2014)
-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법적 기반 및 추진 체계 등 제도 인프라 추진 성과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분석을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 제고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하고자 이루어짐

2. 연구 내용과 범위

- 연구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 법, 인력, 협의조정기구 등 인프라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실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실현 성과
 - 정책 개선 관리 실적,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및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각적 범위 : 2005년 ~ 2015년

※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3년~2015년까지 최근 3년에 집중하여 분석함

3. 연구 방법과 절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 업무 담당자 면접 조사
- 성인지정책 전문가 자문 및 FGI

○ 연구 절차는 아래와 같음

<연구 수행 절차>

| | | | |
|-----|-----------------|---|---|
| 1단계 | 연구 설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 2단계 | 자료 수집 및 분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정책 개선 환류 관련 문헌 검토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2015년 여성가족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결과보고서 검토 |
| 3단계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16. 8. 11/ 11. 4) • 성인지정책 전문가 FGI 실시(1회: '16. 11.10) • 제주 성인지정책 포럼 연구 발표('16. 11.25) |
| 4단계 | 업무담당(공무원) 면접 조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청, 양 행정시 본청, 읍면동 공무원 등 15사례 심층면접조사('16. 11. 9 ~ 12. 7) |
| 5단계 |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170개 사업 과제) •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성인지정책 전문가 3인) •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4회:9.2/10.5/11.8/12.6) • 모니터링 지표 마련 및 서면·현장(담당 인터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6단계 | 분석 · 집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

제2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기존 연구에서 공공 정책의 '성과' 개념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하나는 '성과'를 정책의 1차적 효과인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궁극적 효과인 정책 성과(policy outcome)중에서 후자만을 성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가지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임(김경희외, 2010)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과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강현아외, 2012; 임우연외, 2015), 다수의 연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개념을 정책 산출과 정책 성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기존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가 함께 진행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 연구와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남여성프라자 그리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공동 개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 지표를 주요하게 참고함

2.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지점은 '성평등 정책 실현 성과를 어떻게 살펴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 실현 성과(outcome)는 해당 제도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착된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성과로, 제주 지역의 경우 성인지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을 통해 성평등 실현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개념을 정책의 1차적 효과인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궁극적 효과인 정책 성과(policy outcom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을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 제도 자체의 추진 성과와 성평등 정책 개선을 통한 성평등 실현 성과로 정의함.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는 아래와 같음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 분석 지표 | | 분석 기준 | |
|----------------------------|---|---|---|
| I. 제도 자체 발전 성과 | 1. 법적 기반 | -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가? | |
| | 2. 추진 체계 | 인력 | - 기관 담당 부서 업무 공식성 및 젠더 전문성(업무 분장 표 공식 업무 지정, 젠더 전문가 전담 인력, 순환 보직 등)은 어떠한가? |
| | | 협업조정기구 | - 의사 결정 단위에서 협업조정 기구 상시 설치운영(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성평등조정위원회 등) 되고 있는가? |
| | | 심층 연구 및 컨설팅 지원 | - 성 주류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가? - 컨설팅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정책개선관리 체계 | -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이행 관리 체계 구축되어 있는가? |
| | | 젠더거버넌스 구축 운영 | -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기관 자체 예산으로 정부시민(단체)의회.전문가가 협력하여 대상과제 선정 협의, 모니터링,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
| | | 성과 관리 | -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반영되고 있는가? - 인센티브 제공(인사반영, 우수 사례·우수 기관 선정 시상, 해외 연수 등 포상)되고 있는가? |
| | 3. 제도 추진 예산 | -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등)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심층분석평가연구, 자체 교육 예산, 컨설팅 지원 예산, 젠더 전문가 인건비 등) | |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 -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 - 사업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
| | 5.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실시 | - 소관 공무원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상시 개설(인재개발원 리더십 역량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설)되어 있는가? - 직급별 교육 참여 정도(5급 이상/6급 이하) - 교육 프로그램대상, 내용 등 | |
|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 여성 통계 또는 성인지통계가 정기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는가? - 정책 관련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 활용되고 있는가?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 | | |
| II. 성평등 실현 성과 | 7.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 (개선 의견 통보에 따른 개선 비율) | |
| | 8.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성과 | -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성과 (성평등 개선 계획 마련 유무, 적절성(성인지성), 이행 수준 등) |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1. 법적 기반

- 2014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는 ‘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무원 대상) 분석평가 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담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해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추진 체계

- 담당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기구는 1990년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거쳐 1998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된 후 ‘여성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그리고 지금의 ‘여성가족과’로 변화해왔음. 그러나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담당 인력은 14명에서 16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업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임.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없이 담당자 1인이 다른 업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협의 조정 기구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협의 조정 기구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제주 지역 성

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심층 연구 및 컨설팅

-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정책 관련 심층 분석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음. 2015년 최초로 제도 시행 4년간의 성인지 예결산 성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6년에는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과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가 이루어짐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 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컨설팅 지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과제에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1:1 대면 컨설팅이 강화되고 있음

○ 정책 개선 관리 체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 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 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이에 따른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자는 정책 개선 관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보고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정책 개선 관리 업무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또한 이상의 정책 개선 관리가 성평등 정책 계획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실제 정책 개선 이행 점검 및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차원의 컨설팅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정영태외, 2012)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 인력과 컨설팅 예산 등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민간과 학계의 컨설턴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

음. 2016년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민간과 학계로 이루어진 컨설턴트 21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 지역 성 주류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성과 관리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성과 반영 시스템이 없음.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이나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여러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 ‘다른 업무가 많아 집중하기 어려운 일’, ‘귀찮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제도 추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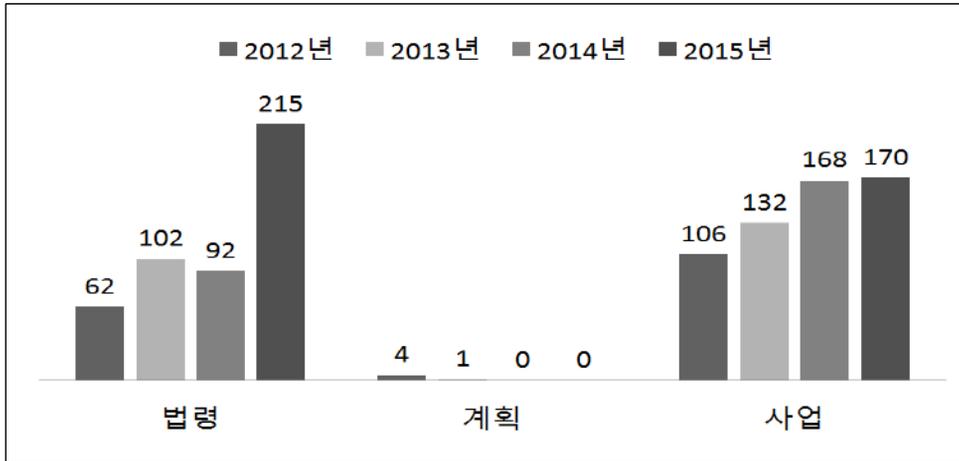
-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와 컨설팅 수당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센터 전담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으로 심층분석연구와 시민 교육, 젠더 전문가 인건비(자문비) 등을 위한 자체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 172개, 2015년 385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 때 부터 대상 정책이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계획’으로 확대되었으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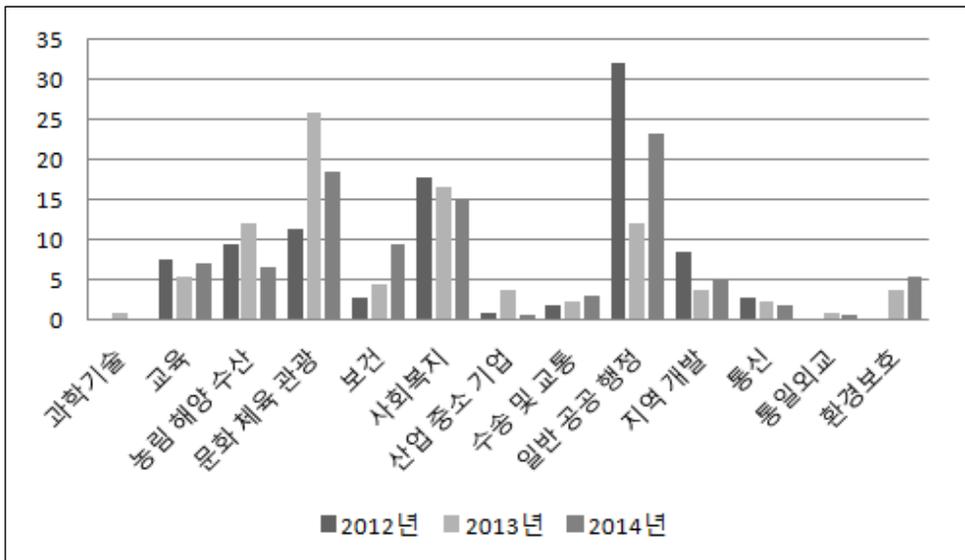
(단위: 개)



○ '사업' 과제를 정부기능분류체계인 사업분야(BRM)를 근거로 분류하면, 전반적으로 '일반 공공 행정',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BRM) (2012~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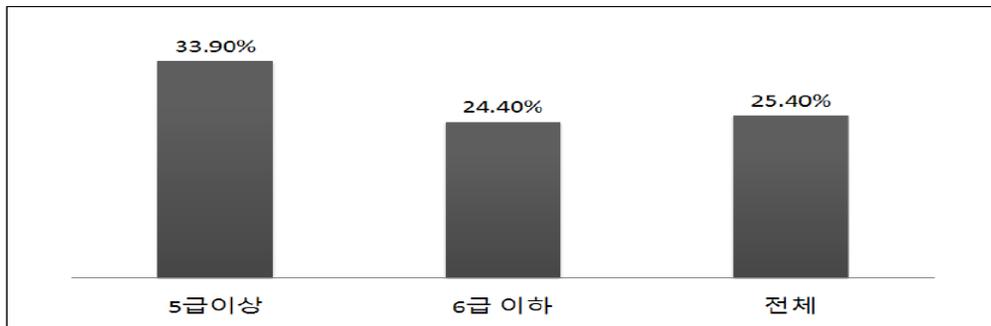


5. 공무원 성인지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과)가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기관인 '제주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는 매해 상반기에 연간 공무원 성인지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교육 시기와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함
-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직급별 이수 현황을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33.9%(184명), 6급 이하 공무원은 24.4%(1,115명)의 이수율을 나타냄. 이처럼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이수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회성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지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율>

(단위: %)



- 2016년 성인지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반과정과 담당자과정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책 사례 등 교육 콘텐츠는 특정 분야 및 사례에 한정되어 있어 각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성인지통계는 '제주여성가족통계'로 1998년부터 시

작하여 격년으로 발간되다가, 2015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되기 시작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관련 자료 즉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자료 등에 성별분리통계가 생산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소결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 기반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으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지역 자체적으로 제도 추진을 위한 독립된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한 담당 인력(부서), 협의조정기구, 정책 개선 관리 체계, 성과 관리 등의 추진 체계가 미약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성인지정책에 관한 심층 분석 연구 및 컨설팅 지원 강화와 다양한 민간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운영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과제와 정책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질적 개선 및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실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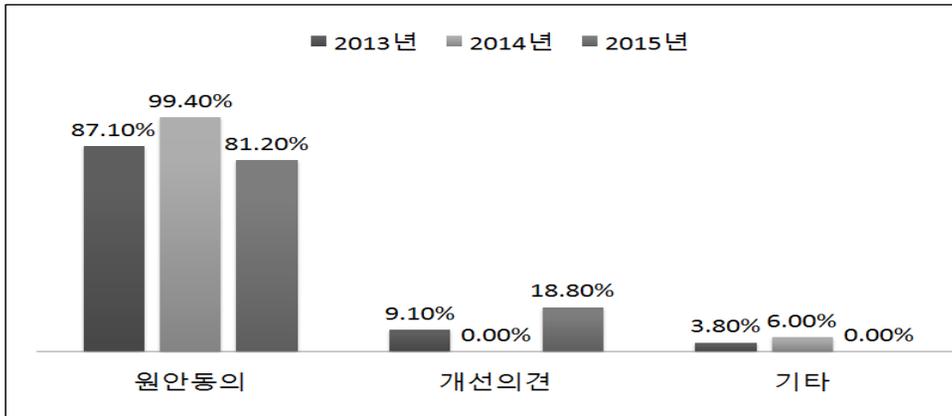
1.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385개로 법령 215개, 사업 170개임. 그 중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 138개, ‘개선 의견’ 32개로 나타남¹⁾. 이처럼 ‘개선 의견’보다 ‘원안 동의’가 많은 이유는 분석평가서 검

토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 동의'로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2013~2015)〉

(단위 : %)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개선 의견' 통보 과제 70개 중 52개(74.3%)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고 있음. 그 중 '법령' 38개 중 24개(63.2%), '사업' 32개 중 28개(87.5%)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음. 특히, 사업의 경우 87.5%의 높은 개선 의견 수용률을 나타냄

2.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가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선 의견' 통보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1) '원안 동의'는 분석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개선안으로 충실하게 제시한 과제 또는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개선 의견'은 제출된 분석평가서 내용을 성평등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분석평가책임관이 정책개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 과제임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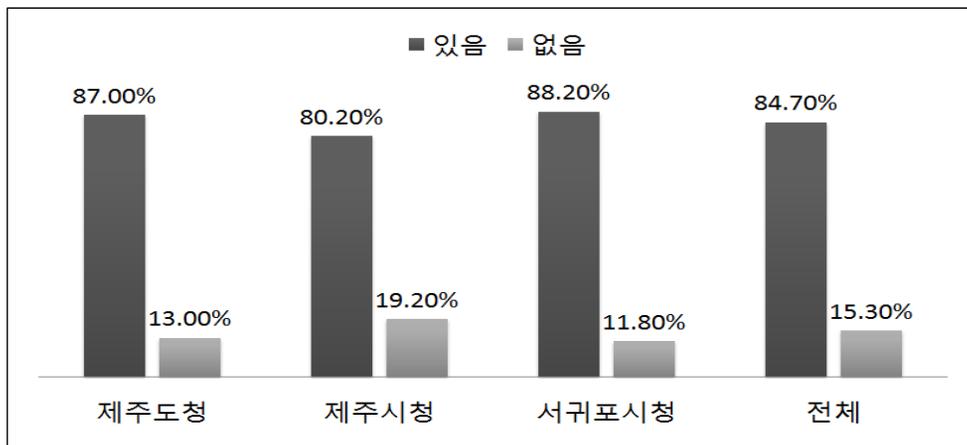
| 구 분 | 내 용 |
|---------|---|
| 모니터링 대상 |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70개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청 46개, 제주시청 73개, 서귀포시청 51개 |
| 모니터링 기간 | · 2016. 9월 ~ 2016. 12월 (4개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9월)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분석(10월) - 현장 모니터링 실시(11월)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12월) |
| 모니터링 방법 |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등 자료 분석, 담당자 인터뷰,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
| 모니터링 내용 | ·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 · 조치 사항 이행 수준 등 |

○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전체 170개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46개, 제주시청 73개, 서귀포시청 51개임. 첫 번째 분석 단계로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170개 과제 중 144개(84.7%)과제가 조치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26개(15.3%)의 과제는 조치 사항이 없었음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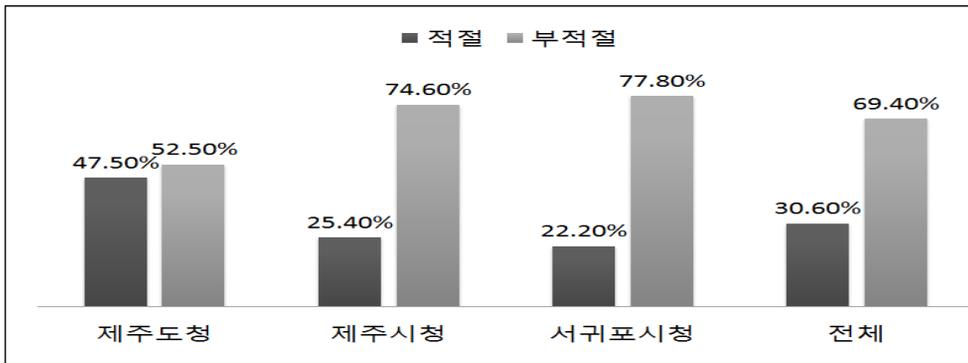


○ 성평등 조차 사항의 적절성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된 과제 144개 과제의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 성평등 조치 사항이 적절하게 작성된 과제는 44개 (30.6%), 부적절하게 작성된 과제는 100개(69.4%)로 나타남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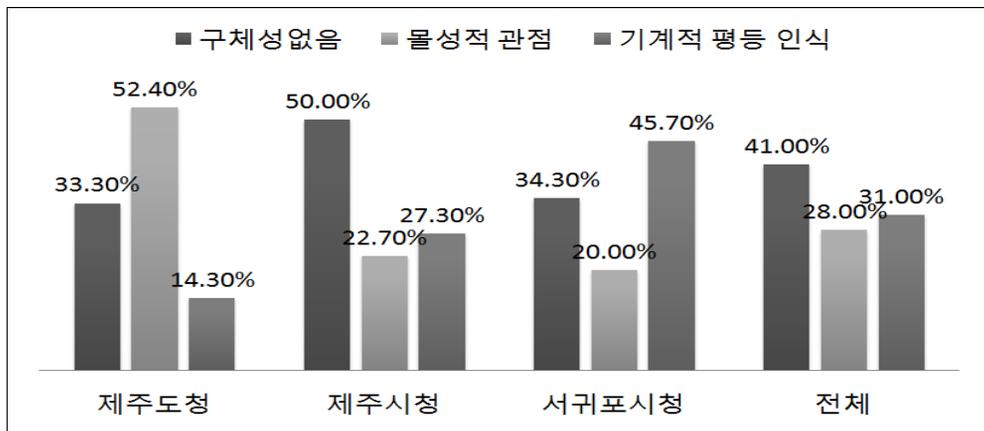


○ 성평등 조차 사항 부적절 과제 유형

- 성평등 조치 사항이 부적절한 100개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평등 조치 사항의 구체성이 낮거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경우였음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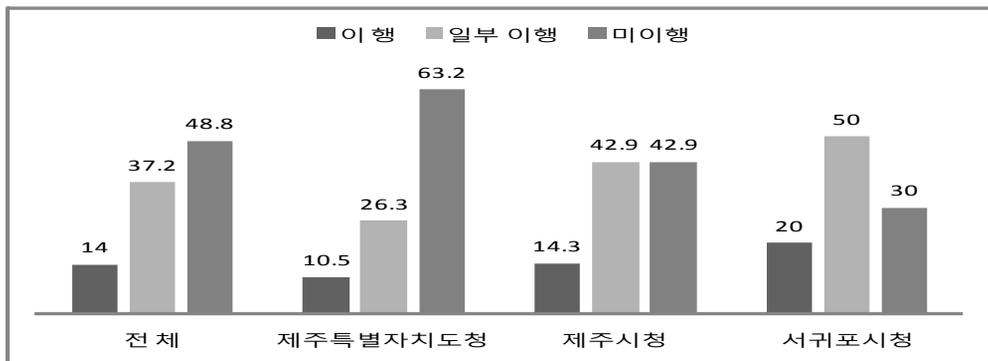


○ 성평등 조차 사항 이행 수준

- 성평등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마련된 과제의 이행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이행’ 6개, ‘일부 이행’ 16개, ‘미이행’ 21개로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이 51.2%, 미이행 사업이 48.8%로 나타남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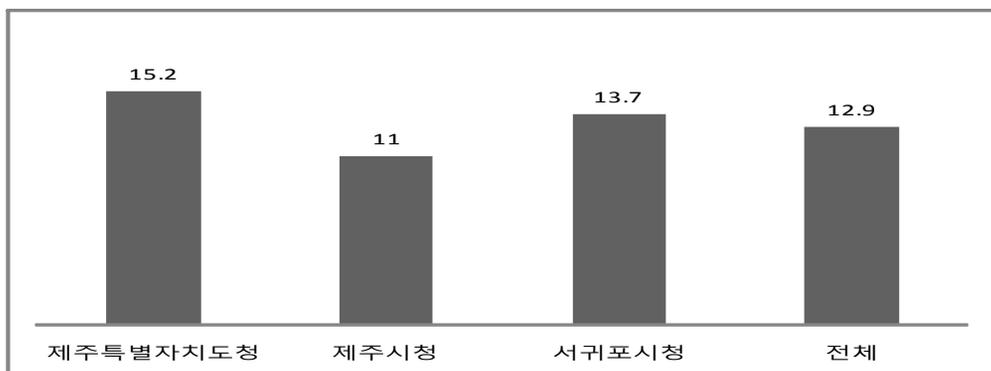
(단위: %)



- 이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성평등 조치 사항이 비교적 적절하게 작성된 우수 과제의 정책 개선 이행률은 약 50%이지만, 이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170개 사업 중 12.9%의 이행률을 보여, 전체 수준에서는 정책 개선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단위: %)



○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성평등 정책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한 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6개임. 서귀포시의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등 2개 사업, 제주시의 ‘가족프로그램운영’, ‘어린이상설프로그램’ 등 2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등 2개 사업임

3. 소결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이행 점검을 통해 성평등 개선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과 과제 담당자로부터 성평등 개선 이행표 접수, 현장 개선 이행 점검 모니터링 등을 병행 실시하였음. 이러한 과정은 과제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라는 사실과 본인이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평등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낳았음
- 그 결과 전체 170개 사업 과제 중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 과제가 22개로 12.9%의 정책 개선 이행률을 나타냈고 그 중 6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정책 개선 이행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제주 도정의 성평등 비전 및 목표 수립
 - 그 동안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간과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임
 - 2017년은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연동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비롯하

여 각 정책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정책 영역별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정책 목표, 주요 업무계획, 중장기 계획 등에 성평등 가치와 비전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 담당 기구 위상 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전담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계’ 로, 담당 기구의 위상이 낮고 전담 인력이 없어 제도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담당 기구를 ‘양성평등국’ 또는 ‘성평등기획관실’ 등으로 개편하여 담당 기구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고, ‘전문직위제’ 를 활용·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분석평가서 검토 및 정책 개선 사항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공무원 중 젠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관련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강화

-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어도 분기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주요 추진 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함. 2016년 12월 현재, 1기 위원의 위촉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새로 정비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젠더 전문가 등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위원으로 확충하는 등 젠더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위원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제주양성평등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각 실국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조직 위상이 높음. 따라서 제주 도정의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 실국장의 참여 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대상 과제 선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해나가야 할 것임

○ 다양한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강화

- 성인지정책에 관한 보다 심화된 논의와 작업 - 성인지정책 관련 심층 분석 및 연구, 대상 과제 선정, 정책 이행 모니터링, 컨설팅과 교육 등 - 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의 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주축로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거점 기관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마련

- 대상 과제 선정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 제주처럼(이하, ’ 제주처럼 ‘)’ 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 검토 제도’ 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 검토 제도’ 란 도지사의 결재를 받는 주요 사업의 결재 서류에 성인지 검토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제도로,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연동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계획과 주요 사업 중심의 제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 마련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우선,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 제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작업은 분석평가책임관(기관 담당)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젠

더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따라서 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인력 배치와 젠더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성평등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행 점검은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데, 우선은 상반기에 성평등 조치 사항이 본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9-10월 경)에 실제 개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집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 기관 및 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지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에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이행률을 부서장 BSC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실제 과제 담당자에 대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임.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서장뿐만 아니라 과제 담당자의 업무를 성과 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 및 자체 예산 마련

- 제주 지역의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컨설팅과 성인지교육이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가지고 상호 소통식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화식 교육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와 성인지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함.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및 성인지교육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젠더 거버넌스 운영, 정책 개선 모니터링, 성인지정책 심층 분석 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제주 지역에서 5년 만에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 분석 연구로, 이전 연구와의 차별점이자 본 연구의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개념화하고 분석 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1차적 성과인 ‘제도 자체의 추진 성과’와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을 통한 ‘성평등 실현 성과’를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음. 또한, 2010년에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 분석틀을 활용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법 제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2015년에 이루어진 타 지역의 성과 분석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추후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은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이를 통해 소수이지만 개선 이행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성평등 실현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평등 개선 성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수준’ 및 ‘성별 만족도’ 등을 반영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현재 제주 지역의 제도 추진 역량의 한계라 할 수 있음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
| 2. 연구 내용과 범위 | 4 |
| 가. 연구 내용 | 4 |
| 나. 연구 범위 | 5 |
| 3. 연구 방법과 절차 | 5 |
| 가. 연구 방법 | 5 |
| 나. 연구 절차 | 7 |
| 제2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9 |
| 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11 |
| 2.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14 |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 17 |
| 1. 법적 기반 | 19 |
| 2. 추진 체계 | 22 |
| 가. 담당 인력 | 22 |
| 나. 협의 조정 기구 | 25 |
| 다. 심층 연구 및 컨설팅 | 28 |
| 라. 정책 개선 관리 체계 | 34 |
| 마.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 37 |
| 바. 성과 관리 | 39 |
| 3. 제도 추진 예산 | 40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 41 |
| 5. 공무원 성인지교육 | 45 |
|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51 |
| 7. 소결 | 52 |

| | |
|--------------------------------------|----|
|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실현 성과 | 53 |
| 1.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55 |
| 가. 2015년 정책 개선 관리 현황 | 55 |
| 나. 개선 의견 수용 과제 | 57 |
| 다. 개선 의견 불수용 과제 | 65 |
| 2.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 66 |
| 가.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 67 |
| 나. 성평등 개선 이행 점검 결과 | 69 |
| 다.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 | 78 |
| 3. 소결 | 87 |
| | |
|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89 |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91 |
| 가. 제주 도정의 성평등 비전 및 목표 수립 | 91 |
| 나. 담당 기구 위상 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 92 |
| 다. 관련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강화 | 92 |
| 라. 다양한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강화 | 93 |
| 마.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마련 | 93 |
| 바.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 마련 | 94 |
| 사.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반영 | 95 |
| 아.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 및 자체 예산 마련 | 96 |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 96 |
| | |
| 참고문헌 | 98 |

표 목 차

| | |
|---|----|
| 〈표1-1〉 면접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 |
| 〈표2-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12 |
| 〈표2-2〉 2010년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연구의 지표(내용) 비교 .. | 13 |
| 〈표2-3〉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지표 | 15 |
| 〈표3-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19 |
| 〈표3-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20 |
| 〈표3-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주요 내용 | 20 |
| 〈표3-4〉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21 |
| 〈표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 기구의 변화(1998년~2016년) | 22 |
| 〈표3-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업무분장표(2016년) | 24 |
| 〈표3-7〉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선정 절차 | 26 |
| 〈표3-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협의 조정 기구 현황 | 27 |
| 〈표3-9〉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정책 관련 심층분석연구 현황(2008~2016) | 29 |
| 〈표3-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 | 30 |
| 〈표3-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실적 (2013년~2015년) | 31 |
| 〈표3-1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별 컨설팅 지원 실적 (2013년~2015년) | 32 |
| 〈표3-1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점검 관련 법 조항 | 34 |
| 〈표3-14〉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추진 절차 | 35 |
| 〈표3-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현황(2010년~2016년) | 38 |
| 〈표3-1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현황 .. | 38 |
| 〈표3-1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 수(2005년~2015년) | 41 |
| 〈표3-1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년~2015년) ... | 42 |

| | |
|--|----|
| 〈표3-1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BRM) (2012~2014년) | 44 |
| 〈표3-2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2007년~2015년) | 46 |
| 〈표3-21〉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 현황 | 47 |
| 〈표3-2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 48 |
| 〈표3-2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과정(2013~2015) | 49 |
| 〈표3-2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 50 |
| 〈표3-2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생산 현황 | 51 |
| 〈표4-1〉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현황 | 55 |
| 〈표4-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2013~2015) | 56 |
| 〈표4-3〉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수용률 | 57 |
| 〈표4-4〉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과제 | 58 |
| 〈표4-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개선 사례 | 61 |
| 〈표4-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과제 | 62 |
| 〈표4-7〉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과제 · | 65 |
| 〈표4-8〉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과제 · | 66 |
| 〈표4-9〉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 68 |
| 〈표4-10〉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개선 이행 모니터링 지표 | 68 |
| 〈표4-1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69 |
| 〈표4-1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 70 |
| 〈표4-1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 | 72 |
| 〈표4-1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 과제 | 73 |
| 〈표4-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 수준 · | 75 |
| 〈표4-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75 |
| 〈표4-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항 | 77 |

그 립 목 차

| | |
|---|----|
| 〈그림1-1〉 연구 수행 절차 | 7 |
| 〈그림3-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인력) | 23 |
| 〈그림3-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율(2013년~2015년) | 31 |
| 〈그림3-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율 (2013년~2015년) | 32 |
| 〈그림3-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별 컨설팅 지원율 (2013년~2015년) | 33 |
| 〈그림3-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 수(2005년~2015년) | 42 |
| 〈그림3-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년~2015년) .. | 43 |
| 〈그림3-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BRM) (2012~2014년) | 44 |
| 〈그림3-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체계 | 45 |
| 〈그림3-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인원(2007년~2015년) | 46 |
| 〈그림3-10〉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율 | 47 |
| 〈그림4-1〉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2013~2015) | 56 |
| 〈그림4-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수용률 | 58 |
| 〈그림4-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69 |
| 〈그림4-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 70 |
| 〈그림4-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 72 |
| 〈그림4-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률 | 75 |
| 〈그림4-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76 |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도구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16)임
- 한국 사회에서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2004년 10개 과제(9개 기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 부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음. 또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추진 근거가 강화되었음
-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을 경과하고 있음. 그 동안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와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확대 등 양적 성과는 이루었으나, 성평등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 지역의 경우 2005년에 1개 사업 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에 172개, 2015년에 385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책 개선 환류와 같은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실현 성과는 미미하여 실질적인 제도 정착 및 발전이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 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9.15)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책 개선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음(정영태, 2014)
- 제주 지역에서는 201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정책 개선 모니터링 방안 모색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 하였음. 이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정영태·강창민·강경숙, 2010)¹⁾이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성과 개념을 제도 인프라

구축 및 분석서 작성 제출 실적과 같은 제도 자체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김둘순외, 2015)는 평가가 이루어짐)

-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법적 기반 및 추진 체계 등 제도 인프라 추진 성과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분석을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 제고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 법·인력 및 협의조정기구(추진 체계) 등 인프라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실적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실현 성과

-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및 사례

-
- 1)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2010)』 연구의 일환에서 추진되었음.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경기, 전남 등 5개 지역이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음
 - 2)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관련 기존 연구들과 여성가족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성과 평가는 성 주류화 실현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성 주류화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김둘순외, 2015; 손문급외, 2015; 윤연숙외, 2015; 이영석, 2014 등)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나.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2)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인 시기를 다루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음
- 성평등 정책 실현 성과의 경우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 분석을 위해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실제 정책 개선 이행 사항을 살펴보았음

3. 연구 방법과 절차

가.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사업 담당자 면접과 전문가 FGI 등을 병행 실시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헌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정책 개선 모니터링 관련 선행 문헌 검토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170개) 및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2015년 여성가족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2)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
-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점검 자료 접수 및 분석
- 현장 모니터링 지표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분석

3)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

-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에 대한 심층 점검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조사 대상은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2016년 현재 담당자임. 조사 방법으로는 미리 준비한 면접 질문 가이드를 바탕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됨. 조사 내용은 크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행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등임

〈표1-1〉 면접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사례 | 성별 | 연령 | 근속년수 | 성인지교육(컨설팅) 경험 | 성인지과제 경험 |
|----|----|-----|------|---------------|----------|
| 1 | 남성 | 44세 | 5년 | 2회 | 없음 |
| 2 | 남성 | 50세 | 14년 | 2회 | 2회 |
| 3 | 남성 | 42세 | 11년 | 2회 | 없음 |
| 4 | 남성 | 46세 | 15년 | 3회 | 1회 |
| 5 | 남성 | 49세 | 8년 | 1회 | 없음 |
| 6 | 남성 | 39세 | 6년 | 2회 | 2회 |
| 7 | 남성 | 41세 | 10년 | 1회 | 2회 |
| 8 | 여성 | 38세 | 10년 | 2회 | 1회 |
| 9 | 남성 | 49세 | 23년 | 4회 | 1회 |
| 10 | 남성 | 46세 | 18년 | 1회 | 5회 |
| 11 | 여성 | 42세 | 20년 | 없음 | 없음 |
| 12 | 남성 | 34세 | 7년 | 4회 | 3회 |
| 13 | 남성 | 34세 | 4년 | 3회 | 2회 |
| 14 | 여성 | 30세 | 6년 | 없음 | 1회 |
| 15 | 여성 | 46세 | 21년 | 3회 | 2회 |

4) 전문가 자문 및 FGI

-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전문가의 자문 및 FGI를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함

나. 연구 절차

- 이상의 연구 수행 방법과 절차를 도표화하면 <그림1-1>과 같음

<그림1-1> 연구 수행 절차

| | | | |
|-----|-----------------|---|--|
| 1단계 | 연구 설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 2단계 | 자료 수집 및 분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정책 개선 환류 관련 문헌 검토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2015년 여성가족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결과보고서 검토 |
| 3단계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16. 8. 11/ 11. 4) • 성인지정책 전문가 FGI 실시(1회: '16. 11.10) • 제주 성인지정책 포럼 연구 발표('16. 11.25) |
| 4단계 | 업무담당(공무원) 면접 조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청, 양 행정시 본청, 읍면동 공무원 등 15사례 심층면접조사('16. 11. 9 ~ 12. 7) |
| 5단계 |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170개 사업 과제) •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성인지정책 전문가 3인) •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4회:9.2/10.5/11.8/12.6) • 모니터링 지표 마련 및 서면현장(담당 인터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6단계 | 분석 · 집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2.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기존 연구에서 공공 정책의 '성과' 개념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하나는 '성과'를 정책의 1차적 효과인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궁극적 효과인 정책 성과(policy outcome)중에서 후자만을 성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가지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임(김경희외, 2010)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과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강현아외, 2012; 임우연외, 2015), 다수의 연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개념을 정책 산출과 정책 성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분석을 시도한 김경희외(2010)와 정영태외(2010) 등은 제도 시행부터 5년 간의 성과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를 모두 포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를 분석하였음. 해당 연구를 실시한 2010년은 제도 시행 만 5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성평등 정책 개선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평등 개선 성과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1차적인 정책 산출을 성과 개념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경상북도의 성주류화 정책 성과를 분석한 이영석(2014)의 연구 또한, 성과 개념을 정책 산출과 정책 성과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산출 측면은 추진 체계와 담당 인력, 성인지교육 성과 등을 살펴보았고, 정책 성과 측면은 정책 개선 사례와 평가 환류 체계 구축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 등을 살펴보았음
- 김들순외(2015)는 김경희외(2010)와 정영태외(2010 외)의 연구가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개념 논의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를 제도 자체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는 데 한정하고 있다고 평가함.³⁾ 또한, 여성가족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성과 평가는 성 주류화 실현의 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성과들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지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함

3)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개념 정의로 인한 한계라기보다는 성인지정책의 내실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김둘순외(2015)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개념을 행정기관에서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 정책 실현성과(outcome)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몇몇 지역 사례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 지표를 개발함
- 이상,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개념과 분석 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2-1〉 기존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구분 | 연도 | 연구명(연구자) | 성과 개념 정의 | 분석 틀 |
|----|------|--|--|---|
| 1 | 2010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경희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개념을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용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산출(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추진체계 및 담당인력, 법·제도적 기반) - 평가결과 환류 체계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과제선정, 지표적용 보고서 작성, 제도 개선안, 환류 실적 보고서 작성) ● 정책 성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도 개선 사례/ 공무원 교육(성인지력 향상)/ 젠더 거버넌스 |
| 2 | 2010 | 제주 지역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정영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희외(2010)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공동 연구로, 앞의 연구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주류화 인프라/ 인적 현황 - 성인지통계/ 성평등교육 ●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영역 변화와 성과 - 성인지정책 개선 또는 환류 사례 - 성평등 교육 실시 성과(만족도 결과 포함)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성과 |
| 3 | 2012 | 광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환류 방안 연구(강현아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및 환류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어 정책 성과(outpu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선 및 환류 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 성인지적 개선 사례 - 정책결정과정의 성 형평성 제고 사례 - 정책 수행방식의 개선 사례 증 발굴 ●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
| 4 | 2014 | 경상북도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이영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주류화정책 성과 분석을 위해 정책산출(output)과 정책성과(outcome)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산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및 담당 인력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 성인지교육 성과 ● 정책 성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선 사례/ 평가 결과 환류 체계 구축/ 젠더 거버넌스 |
| 5 | 2015 |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임우연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성인지적 감수성과 성인지적 실행력 등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련의 참여과정을 통한 역량강화 과정을 ‘성과’로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서 작성 수준 ● 컨설팅 지원 효과 ● 개선 실적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과 수행 방식 - 관련 법령 등의 개선 및 정책결정과정 성별 참여율/ 예산 반영 여부 등 |

| 구분 | 연도 | 연구명(연구자) | 성과 개념 정의 | 분석 틀 |
|----|------|---|---|---|
| 6 | 201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연구(III) : 성과점검 지표 개발과 성과분석 (김돌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정책 실현 성과(outcom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분석평가서 작성 실적 - 공무원 교육 인원 등 • 성평등정책 실현성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성평등 목표 설정 - 정책 성평등 개선 - 여성의 대표성 확대 - 수혜자 만족도 -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증대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고양 -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 7 | 2015 |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손문금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돌순외(2015)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 연구임. 성과 개념과 분석 지표를 공유하고 있음 | |
| 8 | 2015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유연숙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돌순외(2015)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 연구임. 성과 개념과 분석 지표를 공유하고 있음 | |

○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중에서도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가 함께 진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 연구와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남여성프라자 그리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공동 개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 지표를 주요하게 참고함

○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를 시간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에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아래 표는 이상 두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분석 지표(내용)를 비교한 것으로, 본 연구자가 유사한 범주로 정리한 것임

<표2-2> 2010년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연구의 지표(내용) 비교

|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남여성프라자, 인천여성가족재단) | |
|--|---|--|---|
| 추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반 • 행정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 - 조정기구 • 인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인력 - 전문가 인력(연구기관) | 제도 자체 발전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마련 • 추진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인력 - 협의조정기구 - 컨설팅 - 정책관리체계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남여성프라자, 인천여성가족재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관련 활동, 인력 - 기타 지방의회, 언론 등 • 성인지통계 • 성평등교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체계 •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추진 실적 - 대상정책별 분석평가서 추진 실적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 교육실적 - 프로그램 개설 정도 |
| 운영 성과 | • 대상과제 영역변화와 성과 | 성평등 실현 효과 성과 | • 기관 성평등 목표 설정 |
| | • 정책개선 또는 환류 우수사례 | | • 기관 책무성 강화 |
| | • 실행 주체별 성평등 교육 실시 성과 | | • 여성의 대표성 강화 |
| | • 추진체계 및 지역거버넌스 구축사례와 성과 | | • 성평등개선 강화 |
| | | | • 공무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
| | | | • 성별분리통계생산활용 |

2.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과 분석 틀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지점은 ‘성평등 정책 실현 성과를 어떻게 살펴 볼 것인가’⁴⁾하는 것이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 실현 성과(outcome)는 해당 제도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착된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성과로, 제주 지역의 경우 성인지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임. 또한 지금까지 성평등 정책 개선안의 실질적인 이행 점검(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을 통해 성평등 실현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 개념을 정책의 1차적 효과인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궁극적 효과인 정책 성과(policy outcom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을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 제도 자체의 추진 성과와 성평등 정책 개선을 통한 성평등 실현 성과로 정의함

4)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실현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정책 개선 또는 환류 실적 및 사례’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자료 분석과 담당 공무원 및 정책 전문가 등 관계자 인터뷰, 수혜자 설문 조사 등의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성과 지표(<표 2-2>)를 재구성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성과 분석 지표는 크게 '제도 자체 발전 성과(output)'와 '성평등 실현 성과(outcome)' 2영역으로 구분됨. 첫째 영역인 '제도 자체 발전 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 예산,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 등 6가지 세부지표로 구성하였고, 둘째 영역인 '성평등 실현 성과'는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과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성과' 2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함

<표2-3>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지표

| 분석 지표 | | 분석 기준 | |
|----------------------------|------------------------|---|---|
| I. 제도 자체 발전 성과 | 1. 법적 기반 | -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가? | |
| | 2. 추진 체계 | 인력 | - 기관 담당 부서 업무 공식성 및 젠더 전문성(업무 분장 표 공식 업무 지정, 젠더 전문가 전담 인력, 순환 보직 등)은 어떠한가? |
| | | 협업조정기구 | - 의사 결정 단위에서 협업조정 기구 상시 설치·운영(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성평등조정위원회 등) 되고 있는가? |
| | 3. 제도 추진 예산 | 심층 연구 및 컨설팅 지원 | - 성 주류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가? - 컨설팅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정책개선관리체계 | -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이행 관리 체계 구축되어 있는가? |
| | | 젠더거버넌스 구축 운영 | -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기관 자체 예산으로 정부시민(단체)외화전문가가 협력하여 대상과제 선정 협의, 모니터링,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 성과 관리 | -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반영되고 있는가? - 인센티브 제공(인사반영, 우수 사례·우수 기관 선정 시상, 해외 연수 등 포상)되고 있는가? |
| | | 5.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컨설팅, 컨설팅트 교육 등)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심층분석평가연구, 자체 교육 예산, 컨설팅 지원 예산, 젠더 전문가 인건비 등) |
| | |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 - 사업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 | II. 성평등 실현 성과 | 7.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 소관 공무원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상시 개설(인재개발원 리더십 역량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설)되어 있는가? - 직급별 교육 참여 정도(5급 이상/6급 이하) - 교육 프로그램대상, 내용 등 |
| 8.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성과 | | - 여성 통계 또는 성인지통계가 정기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는가? - 정책 관련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 | |
| | | -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 (개선 의견 통보에 따른 개선 비율) | |
| | | -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성과 (성평등 개선 계획 마련 유무, 적절성(성인지성), 이행 수준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1. 법적 기반
2. 추진 체계
3. 제도 추진 예산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5. 공무원 성인지교육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7. 소결

1. 법적 기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이하, 제주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마련되기 시작하였음. 해당 조례는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별 통계 구축'과 같은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조항이 구비됨. 「제주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의 의사결정참여 제고', '양성평등교육' 등임

<표3-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2007.01.10)」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통계 자료의 성별 표기)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 도지사는 정책 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11조(도정참여의 확대)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14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교육기관 및 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 교육기관은 여성공무원의 능력증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

- 「제주여성발전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제주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2015.12.31 시행)됨. 「제주양성평등기본 조례」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평가'와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관련으로, 개정 전 조례 및 현행 법령의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표3-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2015.12.31)」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

- 한편,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법령이 상위 법령의 일부 조항으로만 있다가 별도의 독립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2014년으로, 이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음
- 2014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이하,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는 ‘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무원 대상) 분석평가 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담고 있음

〈표3-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2014.08.20 제정)」의 주요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성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 결과의 공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 제14조(분석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분석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이하, 제주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해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표3-4〉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2009.10.07 제정/ 관련 조항 2012.11.06 신설)」
- 제6조(입법 관련 사항 협의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2011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과 2014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등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주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면서, 이전의 조례 및 상위 법령의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성별 분리 통계’, ‘정책에 여성 참여 확대’, ‘가족, 학교, 사회의 양성평등교육’ 등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요컨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 등 타 법령과 연동하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없는지 여성정책 관련 법 조항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법 조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법 집행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추진 체계

가. 담당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기구는 1990년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거쳐 1998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된 후 ‘여성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그리고 지금의 ‘여성가족과’로 변화해왔음. 그러나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담당 인력은 14명에서 16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 기구의 변화(1998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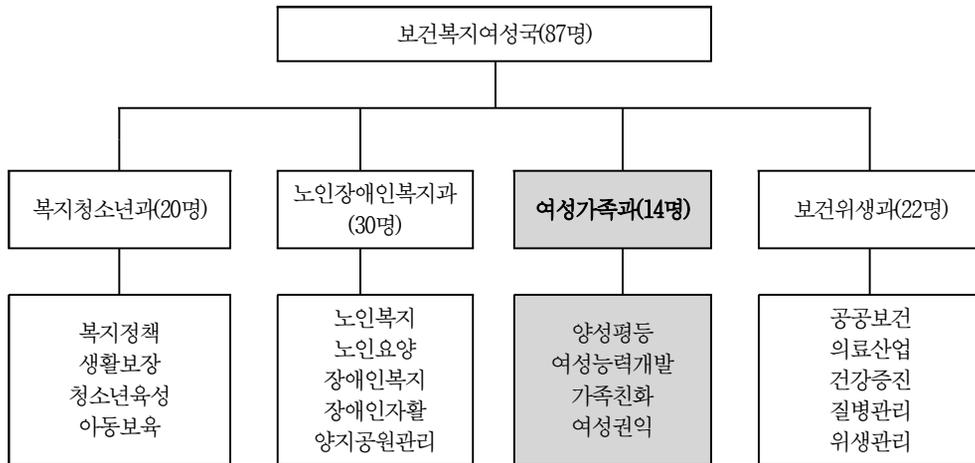
| 연도(시기) | 직제 | 주요업무부서 | 인력 | 비고 |
|---------------------|------------------|------------------------------------|-----|---|
| 1998년~2006년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보육계 | |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단일 행정체계(2개사2개군통합) |
| 2007년 ⁵⁾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계 여성활동지원계 가족지원계 아동보육계 | 15명 | |

| 연도(시기) | 직제 | 주요업무부서 | 인력 | 비고 |
|-----------------|--------------------|--------------------------------------|-----|----|
| 2008년 ~ 2010년 |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 양성평등정책계 여성활동지원계 아동보육계 가족지원계 | 16명 | |
| 2011년 ~ 2015년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 여성정책계 여성활동지원계 아동보육계 다문화가족계 | 16명 | |
| 2016년 10월 현재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계 여성능력개발계 가족친화계 여성권익계 | 14명 | |

*자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부자료

-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하는 행정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임.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인력은 87명으로, 복지청소년과 20명, 노인장애인복지과 30명, 여성가족과 14명, 보건위생과 22명으로 타 부서와 비교하여 여성가족과 소속 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3-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인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5)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보좌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 직속 여성정책특보(2006년~2010)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계 4인, 여성능력개발계 3인, 가족친화계 4인, 여성권익계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계’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는 1인임
-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는 조례 상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업무분장표 등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업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임.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없이 담당자 1인이 다른 업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표3-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업무분장표(2016년)

| 부서 | 직위 | 업무 |
|----------------|-----|----------------------------------|
|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계 |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난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담당자가 교체 되는 등 담당자의 잦은 업무 교체로 인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인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구성원의 전문성 역시 중요하지만, ‘여성가족과’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행을 점검한 결과, 정책 개선 이행 정도가 낮았고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6) 타 지역의 경우 분석평가 수행 기관의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첫째,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직위제를 지정하는 경우(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둘째 외부 전문가 채용(경기도, 충청북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임(여성가족부, 2016).

-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 2>가 대표적으로, <사례 2>는 다문화 가족의 연령이나 개인적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별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 사업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 이 갖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녀 성별에만 귀착시켜 평가할 사업이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성별 차이에 따른 요인만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사례 2>

-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해당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전문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동일 부서 구성원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매우 필요함

나. 협의 조정 기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조정 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가 대표적임. 2000년에 출범한 ‘여성특위’는 제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정책 자문 기구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로 인해 모든 기능이 이관됨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2016년 4월에 설치된 ‘제주 양성평등위원회’는 하위 분과로 ‘성주류화 분과’와 ‘정책개발 분과’ 등을 두고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협의 조정 기구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제선정위원회⁸⁾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 ‘여성특위’는 임기 2년제로 제1기(2000년~2011년)부터 제8기(2014.2.1~2016.1.31)까지 구성·운영되었음. ‘여성특위’는 제4기(2006년~2007년)까지 연간 1억 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연구 기능이 점차 약화됨(정영태외, 2010:16)

8) 지난 10년 동안 ‘과제선정위원회’의 구성원과 성격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초기(2006년~2011년)에는 도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행정이 중심이 되어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후기(2012년~2016년 현재)에는 각 기관 담

서는 적절한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선정 내용과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3-7〉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선정 절차

| 구분 | 내용 | 참석 | 시기 |
|-----------|--|---------------------------------------|---------------|
| 1차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과제선정 일정 및 절차 검토 • 과제 선정 업무 분장 | 도 총괄 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5인 | '15.5.15 |
| 2차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일정 및 절차 구체화 •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지침의 대상 사업 기준 -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 낮은 분야 - 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특화사업 등 | 도 총괄 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2인 | '15.6.15 |
| 3차-5차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과제 선정 워크숍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50개, 제주시 76개, 서귀포시 51개 총 177개 과제 선정 | 각 기관 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관 담당 컨설턴트 | '15.7.17~7.24 |
| 6차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추가 과제 선정 워크숍 개최 - 도본청 과제 16개 추가 선정 | 도 총괄 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2인 | '15.9.18-9.21 |

- 이와 같이, 과제 선정을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선정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력이 약하며 총괄 부서(담당)의 위상 또한 낮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과 같은 양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 과제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성평등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기본적인 선정 기준으로 하지만, 결국 기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지속 과제'나, 예산 규모와 성평등 파급 효과 면에서 기대 효과가 낮은 소규모 사업들이 선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문제는 과제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 과제 담당자들의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불거지는 부

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민간 컨설턴트 등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실제 과제 선정 작업을 하는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요컨대, 행정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분)도 물론 있지만, 대상 과제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제 담당 사업은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었지만, 2016년에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대상 과제 기준이 모호한 거지. 선정 기준이 너무 작위적이예요. <사례 1>

사업 선정이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상 사업을 정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관리도 되고, 수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내용을 담고, 그것을 모델링해서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 13>

-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 과제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¹⁰⁾가 설치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별도로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조정 기구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3-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협의 조정 기구 현황

| 구 분 | 출범시기 | 구성 | 기능 |
|---------|------|---|------------------|
| 과제선정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2006~2010) : 도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여성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

- 9) 일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사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의 수혜자를 남성과 여성 50:50으로 균등하게 참여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수혜자의 성별 수혜 특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업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성별 특성과 요구를 고루 반영하여 한쪽 성이 정책에서 배제됨이 없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이지 무조건적으로 성별 수혜를 균등하게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님
- 10) 201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곳은 243개 중 60%(약 146개)이고, 실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약 49개)임.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76.5%)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8개 기관(47.1%)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6c).

| 구 분 | 출범시기 | 구성 | 기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기(2011~2016)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민간 컨설턴트 | |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2014. 12월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 2016. 4월 | 위원장(도지사)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상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관련 등 |

*자료: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 요컨대, 제주 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협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능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대상 과제 선정 및 정책 개선 및 환류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관장하는 관련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심층 연구 및 컨설팅

1) 심층 연구

-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 출연 연구 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곳이 있음. 우선, 제주발전연구원은 1995년 5월,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원하였음
- 제주발전연구원은 2005년 5월,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함.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당시,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이 강화됨
- 이처럼 제주 지역의 여성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기관이 설립되었으나, 연구 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에 대한 요

구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2013.9.25)」가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재단법인 형태 독립된 여성정책연구 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하기에 이룸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 지역의 여성과 가족 정책 연구 및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성인지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등 제주 지역 여성·가족 정책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 주류화정책 관련 심층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¹¹⁾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 2010년 「제주 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등 2개의 연구가 이루어짐
-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는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최초로 분석한 보고서임.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2년에 성인지예산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됨

〈표3-9〉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정책 관련 심층분석연구 현황(2008~2016)

| 구분 | 발행시기 | 연구명 | 발행처 |
|----|-----------|----------------------------------|------------------------|
| 1 | 2008.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
| 2 | 2010.12월 | 제주 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 3 | 2011. 12월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연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 4 | 2012.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 제주발전연구원 |
| 5 | 2014. 2월 |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 6 | 2015.1월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방안 | 제주발전연구원 |
| 7 | 2015.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분석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8 | 2015.12월 |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9 | 2016.5월 |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 강사 지원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매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심층 분석 연구에서 제외함

| 구분 | 발행시기 | 연구명 | 발행처 |
|----|------------------|----------------------------------|-----------|
| 10 | 2016.6월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예산 분석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11 | 2016.8월 |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12 | 2016.12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제주 지역에서 성 주류화정책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설립된 이 후 부터라고 할 수 있음. 2015년 최초로 제도 시행 4년간의 성인지 예·결산 성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6년에는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과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가 이루어짐
- 이처럼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존재는 제주 지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심층 분석 연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사례 발굴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등 성인지정책 관련 심층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컨설팅 지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업무인 공무원 컨설팅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 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컨설팅 지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제에 컨설팅이 지원되고 있음

<표3-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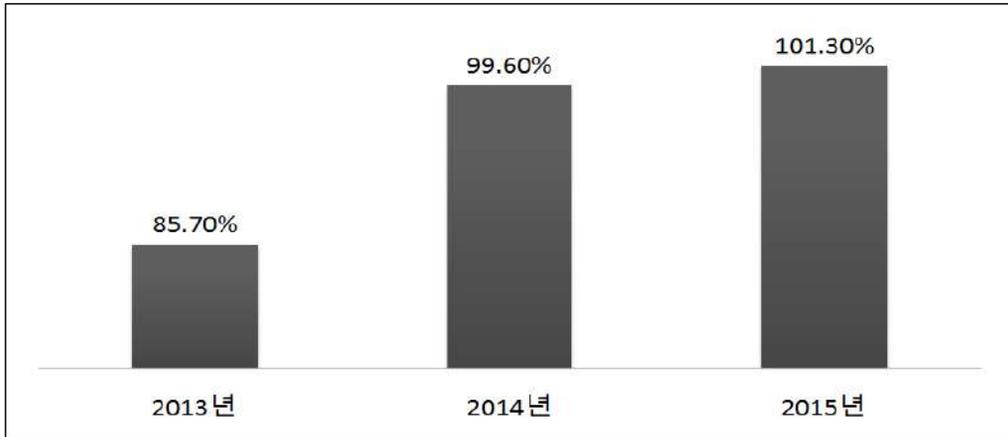
(단위: 과제 수, %)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컨설팅 과제 수(B) | 컨설팅 지원 비율 (B/A*100) |
|-------|------------|-------------|------------------------|
| 2013년 | 302 | 259 | 85.7% ¹²⁾ |
| 2014년 | 260 | 259 | 99.6% |
| 2015년 | 385 | 390 | 101.3% ¹³⁾ |

*자료: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그림3-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율(2013년~2015년)

(단위: %)



○ 컨설팅 지원 실적을 방법별로 살펴보면, 한 과제 당 대면과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컨설팅 지원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2015년의 경우 대면 컨설팅 비율이 26.1%로 전년도인 2014년 에 비해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1 대면 컨설팅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3-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단위: 건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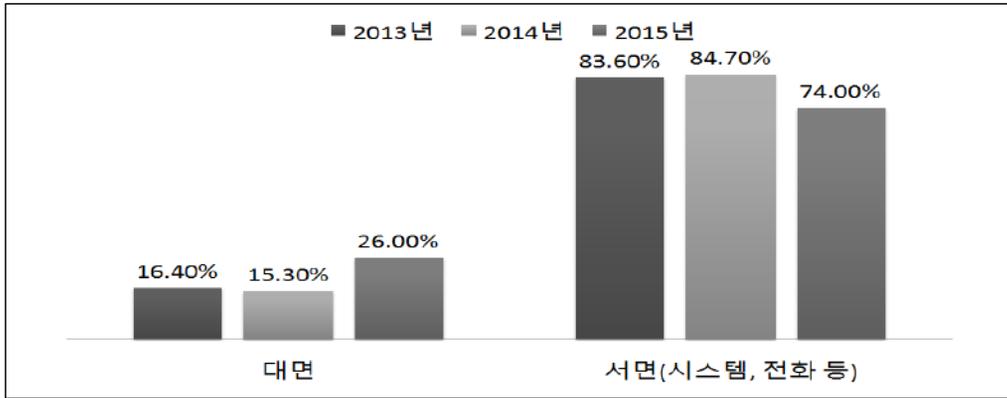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방법별 컨설팅 건수 | | | 방법별 컨설팅 지원 비율 (B/A*100) |
|-------|------------|------------|------------|------------------|-------------------------|
| | | 합계(B) | 대면 |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 |
| 2013년 | 302 | 373(100%) | 61(16.4%) | 312(83.6%) | 123.5 |
| 2014년 | 260 | 346(100%) | 53(15.3%) | 293(84.7%) | 133.1 |
| 2015년 | 385 | 524(100%) | 136(26.0%) | 388(74.0%) | 136.1 |

*자료: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 12) 2013년 컨설팅 지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도 교육청 과제 47개 중 6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컨설팅 지원 비율12.7%),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99%의 컨설팅 지원 비율을 보임
- 1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보다 컨설팅 과제수가 더 많은 이유는 대상 과제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컨설팅 과제 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3-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을(2013년~2015년)

(단위: %)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과정마다 이루어졌음.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에 과정에서 컨설팅이 많았음
- ‘분석평가서 작성’은 사업 과제 담당자가 수행하고 ‘분석평가서 검토’는 분석책임관(기관 담당자)의 역할로, 기관담당자에 대한 컨설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3-1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단위: 건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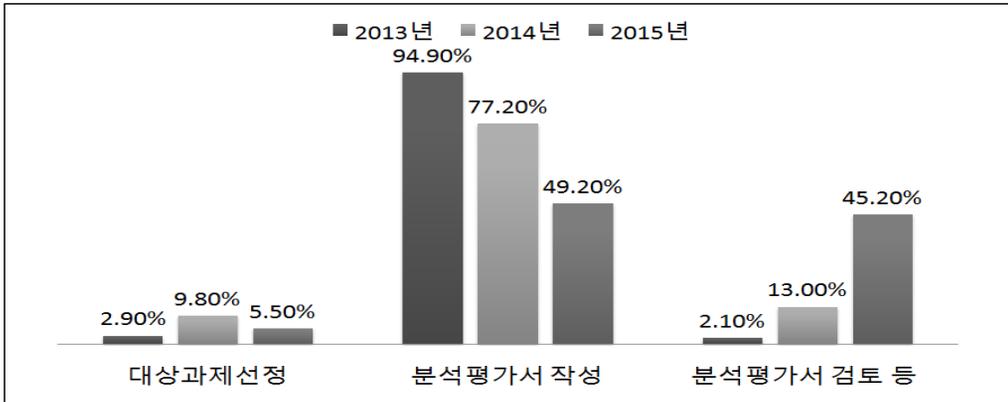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과정별 컨설팅 건수 ¹⁴⁾ | | | |
|-------|------------|---------------------------|----------|------------|---------------------------|
| | | 합계(B) | 대상과제 선정 | 분석평가서 작성 | 기타(검토의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 |
| 2013년 | 302 | 373(100%) | 11(2.9%) | 354(94.9%) | 8(2.1%) |
| 2014년 | 260 | 346(100%) | 34(9.8%) | 267(77.2%) | 45(13.0%) |
| 2015년 | 385 | 524(100%) | 29(5.5%) | 258(49.2%) | 237(45.2%) ¹⁵⁾ |

*자료: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 14) 년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서식에 의하면, 해당 표는 컨설팅 부문별 실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과정에 따른 컨설팅 실적을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정별 건수로 수정함
- 15) 2015년의 과정별 컨설팅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등 법령 개정이 급증함에 따라 컨설팅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데 법령의 경우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그림3-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별 컨설팅 지원율(2013년~2015년)

(단위: %)



- 요컨대, 과제 담당자에 대한 대면 컨설팅 강화와 2016년에는 서면 컨설팅과 대면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연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효과가 보다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음. 물론 과제 담당자 중 컨설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컨설팅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성평등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컨설팅은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 단지 성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의 평등성’이라는 관점과 같이 접근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되었거든요.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까. <사례 4>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방향을 제시해주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사례 6>

컨설팅은 할 때마다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사례 12>

성별영향분석 컨설팅에 대해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는 이론과 현실에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기관(또는 사람)은 현장에 와서 대면 평가(컨설팅)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장에서 여러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10>

- 한편, 컨설팅 내용이 정책에 반영하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제기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과제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라. 정책 개선 관리 체계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에 대한 점검 체계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제주 지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초기인 2007년부터 기관 자체적으로 매해 ‘환류 점검 워크숍’과 환류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는 등 성평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과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2014)」가 시행됨에 따라 정책 개선 실적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3-1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점검 관련 법 조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9조) |
|---|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은 그 해 추진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 의견’¹⁶⁾으로 통보한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수용 여부¹⁷⁾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¹⁸⁾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 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6) 과제담당자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성평등을 위한 계획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17) ‘개선 의견’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반영계획서에는 ‘개선의견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18) 또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개선 예정이거나 개선 완료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실제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행을 할 의무가 있음

〈표3-14〉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추진 절차

| 구 분 | 내 용 | 담 당 | 시 기 |
|--------------|------------------------------------|-------------------|-------------------------------|
| 성평등 조치 사항 마련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 과제 담당 | 8월 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 | 컨설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컨설턴트 | |
| 분석평가서 검토 | 분석평가서 검토 의견 통보 | 분석평가책임관 | |
| | 분석평가서 전문가 자문* | 젠더전문가 | |
| 반영 계획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 의견' 의 경우 반영계획서 제출 | 과제 담당 | 검토의견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정책 개선 관리 | 정책 개선 관리 및 실적 보고 | 분석평가책임관 | 차기년도 2월 말 |

* 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은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 지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괄(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자는 정책 개선 관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보고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정책 개선 관리 업무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다시 말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젠더 전문성 등 업무 역량이 부재함에 따라 젠더연구자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선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원안 동의'¹⁹⁾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 의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안 동의' 과제의 경우 개선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²⁰⁾
- 또한, 이상의 정책 개선 관리는 성평등 정책 계획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실제 정책 개선 이행 점검 및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로 과제 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평등 개선 계획을 실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19) 과제담당자가 작성한 분석평가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별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

2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침 개정을 통해 검토의견 통보서의 '원안 동의'를 '자체개선안 동의'와 '개선 사항 없음'으로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자체개선안 동의'의 경우 별도로 정책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부서에) 발령받고 이 사업 담당한지 5개월 됐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이번에 개선안 이행점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 1>

올 해 7월부터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전임자에게 인계받을 때에 성평(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에 대한 설명은 못 들었고, 이행점검 서면 제출 할 때 알았습니다. <사례 3>

발령받고 온 지 2달 정도 돼요.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성평등정책 개선안 이행 여부를 제출할 때야 평가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례 5>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전의 분석서 개선안도 이번 에 보게 됐고요. 그런데 이전 담당자도 잘 모르고 개선안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 구분하여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인수인계 할 때 그런 부분을 듣지는 못했어요. <사례 11>

(내년에도 지속 과제여서 해당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인건 알았는데, 기존 개선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11월 4일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에 개선안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현장 모니터링 점검 온다고 해서 기존 개선안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협약 기관에 구두로 개선안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이에요. 아마 요청한대로 진행 중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알았다더라면 협약할 때 반영했을 거예요. <사례 14>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올 해 처음으로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자, 많은 과제 담당자들이 ‘왜 안하던 것을 하느냐?’, ‘내 업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인 사실을 몰랐다’ 등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음. <사례 8>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 개선 이행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은 해요. 그런데 제도의 처음부터 결과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과정까지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반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단절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특히 부서장의 리드 하에 전반적인 맥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4>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정책 개선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라고 할 수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 개선 이행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마. 젠더거버넌스 구축 · 운영

-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2010년 이후로, 이 때 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에 관여한 민간 전문가(컨설턴트)는 1-2명의 소수에 불과하였음
- 단, 2010년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 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젠더전문가(연구자)와 NGO활동가, 공무원, 의회의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확장형 네트워크인 ‘제주지역 성주류화실행 네트워크’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었음
- 이는 제주 지역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과 언론인으로 확대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추진 주체 및 예산 등의 추진 기반이 미약하여 다음 해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제주 지역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차원의 컨설팅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정영태외, 2012)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 인력과 컨설팅 예산 등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민간과 학계의 컨설턴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2016년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민간과 학계로 이루어진 컨설턴트 21명²¹⁾이 활동하

21) 2016년에 위촉된 컨설턴트는 18명임

고 있는 상황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3-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현황(2010년~2016년)

| 년 도 | 인 원 | 구 성 |
|-------|-----|--------------|
| 2010년 | 3명 | 학계, NGO |
| 2011년 | 3명 | 학계, NGO |
| 2012년 | 21명 | 학계, NGO |
| 2013년 | 11명 | 학계, NGO |
| 2014년 | 9명 | 학계, NGO, 법조계 |
| 2015년 | 16명 | 학계, NGO, 법조계 |
| 2016년 | 21명 | 학계, NGO, 법조계 |

*자료: 각 년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 2015년 지난 한 해,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선정 워크숍’과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 ‘2015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포럼’, ‘성인지정책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음

〈표3-1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현황

| 구분 | 프로그램명 | 횟수 | 참석자 |
|----|---|----|--|
| 1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워크숍 | 5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
| 2 |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 5회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기존 및 신규 컨설턴트 |
| 3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대면 컨설팅 | 4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
| 4 | 2015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정치포럼 공동개최) -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및 지방의회 심의 활성화 방안 - | 1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의회의원, 시민단체, 도민 등 |
| 5 |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전문가 간담회 | 2회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의회 의원 |

* 자료: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 이처럼 제주 지역 성 주류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앞으로 제주 지역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회와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바. 성과 관리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성과 반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지난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을 부서 성과관리(BSC) 평가 지표로 관리함으로써 각 부서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과제 담당자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인센티브가 없어 한계적(정영태외, 2012)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짐
- 각 기관의 성과 관리 제도는 해당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다시 말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만나본 과제 담당 공무원들은 의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성과 반영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성과 반영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요성도 낮은데 무슨 보상까지 하겠어요? <사례 7>

자기 업무를 당연히 하는 건데 따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크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큰 (업무)영역이 아니니 때문에 더 그런 거 같고요. <사례 9>

성별(영향분석평가)을 했다고 해서 성과 반영이나 보상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례 15>

- 그러나 이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의 필요성에 대해 회

의적인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이 부재한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이나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러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 ‘다른 업무가 많아 집중하기 어려운 일’, ‘귀찮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수행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함

성별분석평가가 늘 해왔던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상 사업이 바뀌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일의 중요도도 높이고 동기 부여를 하려면 보상 체계가 있어야할 것 같은 거죠. <사례 8>

○○에서 근무할 때도 성평등 관련 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했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되었어요. 연속성이 없어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그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상벌 제도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부서에 상이나 벌 제도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부서장이 이것을 챙기고 견인하는 역할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강제성도 없고, 패널티도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만큼 중요도도 떨어진다 이거죠. 그냥 대상 과제가 되면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례 12>

-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와 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수율 및 사업 실시율을 성과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6)
- 제주 지역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에 따르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 관리 등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3. 제도 추진 예산

-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원 구원 인건비와 컨설팅 수당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거점 기관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정 위탁기관으로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여성가족부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컨설팅트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사 수당 500만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숍 500만원으로 총 천만원에 불과함
- 여성가족부가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센터 전담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으로 심층분석 연구와 시민 교육, 젠더 전문가 인건비(자문비) 등을 위한 자체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 172개, 2015년 385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 때 부터 대상 정책이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계획’으로 확대됨²²⁾.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 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3-1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 수(2005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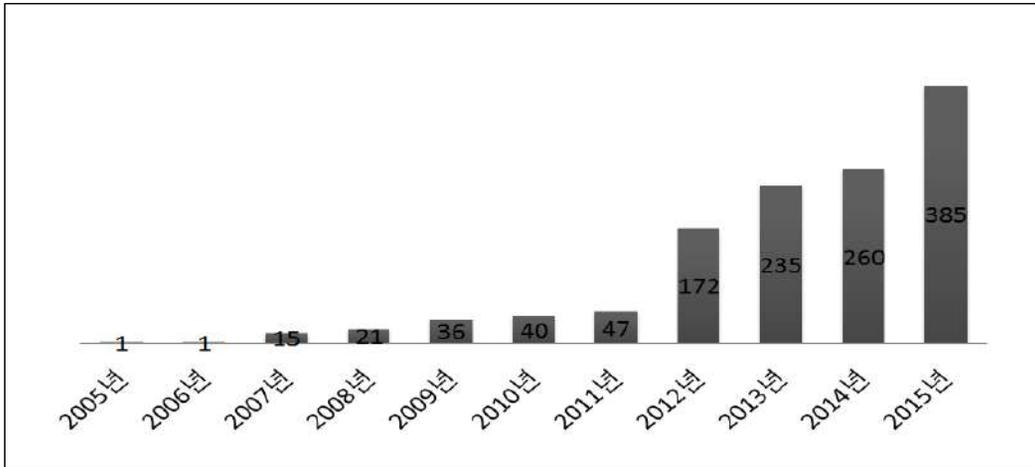
(단위: 개)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전체 |
|-----|------|------|------|------|------|------|------|------|------|------|------|-------|
| 과제수 | 1 | 1 | 15 | 21 | 36 | 40 | 47 | 172 | 235 | 260 | 385 | 1,213 |

2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음. ①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②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임

〈그림3-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 수(2005년~2015년)

(단위: 개)



□ 대상 정책별 과제

-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대상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의 경우 2012년 106개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은 170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령’은 2012년 62개, 2013년 102개, 2014년 92개, 2015년 215개로, 해당 연도에 제·개정되는 법령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는 매년 다르게 나타남. 제주 지역의 경우 대상 법령의 대다수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에 4개, 2013년 1개 과제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과 2015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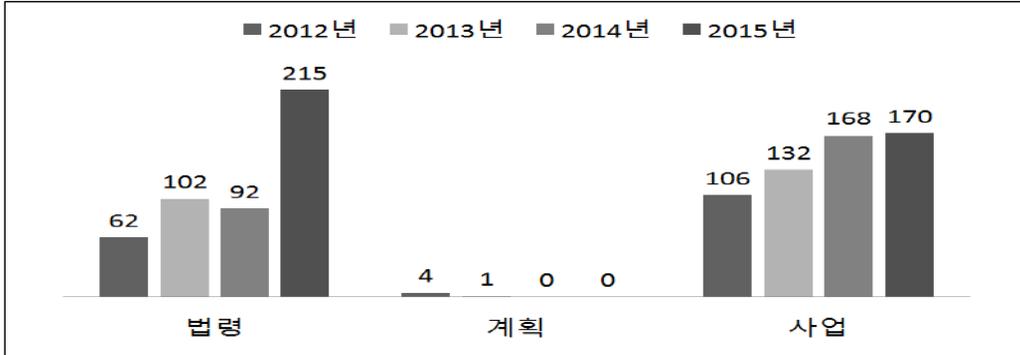
〈표3-1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년~2015년)

(단위: 개)

| 구 분 | 전체 | 법령 | 계획 | 사업 |
|-------|-----|-----|----|-----|
| 2012년 | 172 | 62 | 4 | 106 |
| 2013년 | 235 | 102 | 1 | 132 |
| 2014년 | 260 | 92 | 0 | 168 |
| 2015년 | 385 | 215 | 0 | 170 |

<그림3-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년~2015년)

(단위: 개)



-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중장기)‘계획’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양적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사업’의 경우 2015년에 170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 예산 사업²³⁾ 약 800여개 중 약 20% 이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정책의 양적 성과에 치중하였을 때, 대상 과제의 적절성 및 개선 성과 등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분야별(BRM) 사업 과제²⁴⁾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를 정부기능분류체계인 사업분야(BRM)를 근거로 분류하면, 전반적으로 ‘일반 공공 행정’,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광’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2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대상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 사업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단, 단위 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사업으로 작성 가능함(여성가족부 지침)

24) 각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분야별 분류 작업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2015년 과제에 대한 사업 분야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 2012년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2.1%, ‘사회복지’ 분야 17.9%, ‘문화 체육 관광’ 분야 11.3% 순으로 나타남
- 2013년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25.8%, ‘사회복지’ 분야 16.7%, ‘일반 공공 행정’ 분야와 ‘농림 해양 수산’ 분야 각각 12.1%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3.2%, ‘문화 체육 관광’ 분야 18.5%, ‘사회 복지’ 분야 14.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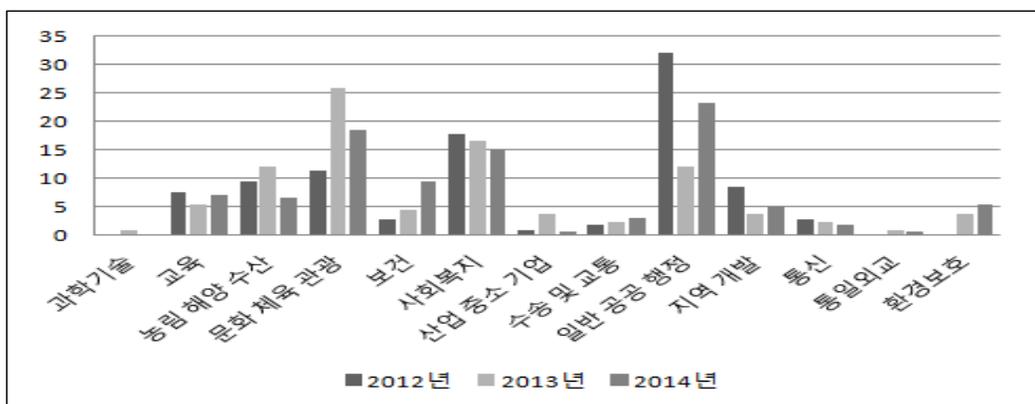
〈표3-1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BRM) (2012~2014년)

(단위 : 개, %)

| 구분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
| | 과제수 | 비율 | 과제수 | 비율 | 과제수 | 비율 |
| 공공질서 및 안전 | 5 | 4.7 | 8 | 6.1 | 7 | 4.2 |
| 과학기술 | 0 | 0.0 | 1 | 0.8 | 0 | 0.0 |
| 교육 | 8 | 7.5 | 7 | 5.3 | 12 | 7.1 |
| 농림 해양 수산 | 10 | 9.4 | 16 | 12.1 | 11 | 6.5 |
| 문화 체육 관광 | 12 | 11.3 | 34 | 25.8 | 31 | 18.5 |
| 보건 | 3 | 2.8 | 6 | 4.5 | 16 | 9.5 |
| 사회복지 | 19 | 17.9 | 22 | 16.7 | 25 | 14.9 |
| 산업 중소기업 | 1 | 0.9 | 5 | 3.8 | 1 | 0.6 |
| 수송 및 교통 | 2 | 1.9 | 3 | 2.3 | 5 | 3.0 |
| 일반 공공 행정 | 34 | 32.1 | 16 | 12.1 | 39 | 23.2 |
| 지역 개발 | 9 | 8.5 | 5 | 3.8 | 8 | 4.8 |
| 통신 | 3 | 2.8 | 3 | 2.3 | 3 | 1.8 |
| 통일외교 | 0 | 0.0 | 1 | 0.8 | 1 | 0.6 |
| 환경보호 | 0 | 0.0 | 5 | 3.8 | 9 | 5.4 |
| 총계 | 106 | 100 | 132 | 100 | 168 | 100 |

〈그림3-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BRM) (2012~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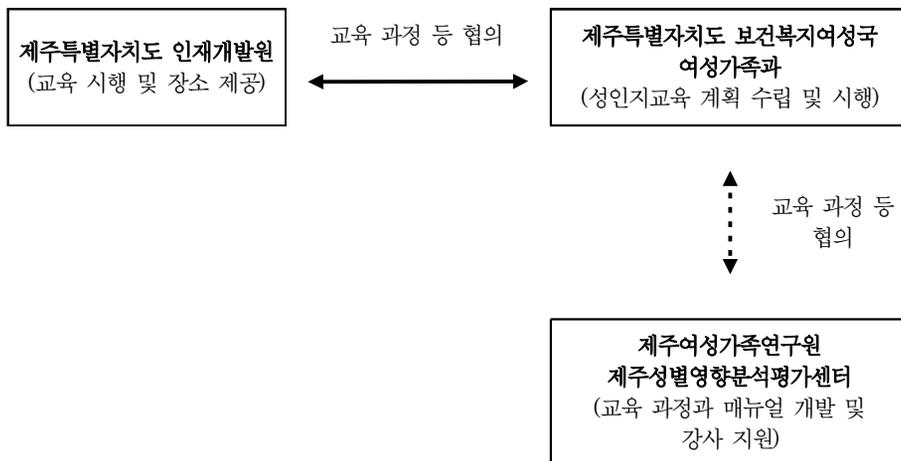
- 앞으로, '농림 해양 수산' 및 '보건', '수송 및 교통', '지역 개발',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공무원 성인지교육

□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 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과)가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 기관인 '제주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는 매해 상반기에 연간 공무원 성인지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교육 시기와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3-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체계



* 자료: 강경숙(2016)

-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 기관인 '제주인재개발원'은 매해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 전반에 대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지 교육의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담당 부서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단, 제주인재개발

원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 중 ‘신규 임용자 과정(7~9급 임용자 대상)’에 성인지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전체 교육시간 140시간 중 성인지 교육은 1시간(제주인재 개발원, 2016)에 불과함

- 요컨대,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인 지정책의 추진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한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상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

- 제주 지역의 성인지교육은 200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7 회 실시되었고 8,148명의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 2015년에는 교육 횟 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집합 교육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교육으로 교육 방식이 개선²⁵⁾되었기 때문임

<표3-2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2007년~2015년)

(단위: 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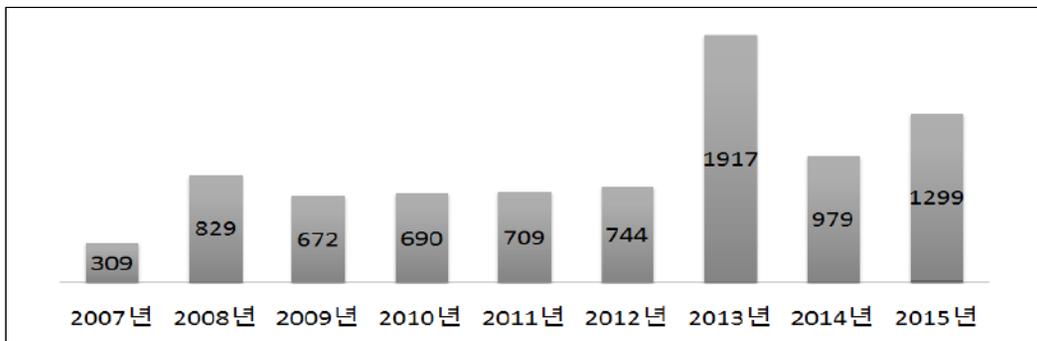
| 구분 | 전체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실시횟수 | 77 | 6 | 13 | 5 | 5 | 5 | 6 | 9 | 9 | 19 |
| 교육인원 | 8,148 | 309 | 829 | 672 | 690 | 709 | 744 | 1,917** | 979 | 1,299 |

* 자료: 강경숙(2016)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교육을 별도로 실시.(성인지예산교육 384명,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1,236명, 간부공무원 297명)

<그림3-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인원(2007년~2015년)

(단위: 명)



25) 이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지표 변화를 반영한 것임. 해당 지표에 따르면 성인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상한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직급별 이수 현황을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184명이 참여하여 5급 이상 전체 공무원 543명 중 33.9%의 이수율을 나타냈고, 6급 이하 공무원은 1,115명이 참여하여 전체 4,567명 중 24.4%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3-21〉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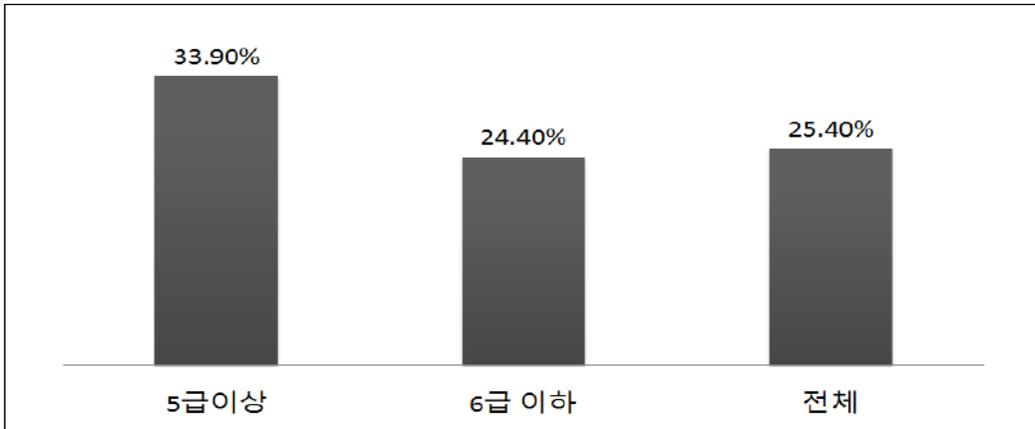
(단위: 명, %)

|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율 |
|--------------|--------|--------|--------|
|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 543명 | 184명 | 33.9% |
|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 4,567명 | 1,115명 | 24.4% |
| 전 체 | 5,110명 | 1,299명 | 25.4% |

* 교육 대상자(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는 2014년 12월 기준

〈그림3-10〉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율

(단위: %)



- 이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이수율이 33.9%로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이수율 24.4% 보다 높지만, 다음 표와 같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회성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지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3-2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 구 분 | | 내 용 |
|-------------|------|---|
| 성인지예산교육 | 교육내용 | ○ 성인지예산제도 이해 및 작성법 |
| | 교육일시 | ○ 총 1회(8. 20) |
| | 교육시간 | ○ 1시간 |
| | 교육대상 | ○ 각 기관 예산담당 300여명 |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교육내용 | ○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서 작성법 이해 ○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 사례 실무 |
| | 교육일시 | ○ 총 16회(4월~6월) |
| | 교육시간 | ○ 4시간 |
| | 교육대상 | ○ 도 분청 및 행정시 공무원 705명 |
| 간부공무원교육 | 교육내용 | ○ 성인지 관점 및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
| | 교육시간 | ○ 2시간 |
| | 교육대상 | ○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84명 |
| 신규공무원교육 | 교육내용 | ○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서 작성법 이해 ○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 사례 실무 |
| | 교육일시 | ○ 1회(12월) |
| | 교육시간 | ○ 4시간 |
| | 교육대상 | ○ 서귀포시 신규 공무원 110명 |

* 자료: 강경숙외(2015)

□ 공무원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초기(2007년~2012년)에는 과제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일반 공무원으로 점차 확대하여 시행²⁶⁾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 공무원 대상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 반면 과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 과정 및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6) 성인지 교육 시행 초기(2007년~2012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 전체의 성인지적 역량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정영태외, 2010).

〈표3-2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과정(2013~2015)

| 구분 | 교육과목 | 세부 내용 | 교육대상 | 시간 |
|--------------------|-----------------------------------|---|------------------------------|----------|
|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 성인지관점 및 성인지정책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필요성 및 이해 | 도 및 행정시 (읍면동) 전 공무원 | 2H |
|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분석서 작성 실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활용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보고서 작성법 실습 | | 2H |
| 간부 공무원 교육 | 성인지관점 및 성인지정책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필요성 및 이해 | 5급 이상 간부공무원 | 2H |
|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분석서 작성 실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활용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보고서 작성법 실습 | | 2H |
| 신규 공무원 교육 | 성인지관점 및 성인지정책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필요성 및 이해 | 신규 공무원 | 2H |
|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분석서 작성 실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이해 및 활용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보고서 작성법 실습 | | 2H |
| 성인지 예산 교육 |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및 개념 이해 성인지예산서 작성법 | 예산담당 공무원 | 1-2 H |

* 자료: 강경숙(2016)

- 교과목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담당자에게 필요한 '분석보고서 작성법 실습'과 같은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시 말해, 성인지정책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의 현재 업무와 교육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남(강경숙외, 2015)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에는 일반공무원과 과제담당공무원을 구분하여 일반공무원에게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과제담당 공무원에게는 사례와 실습 중심 워크숍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또한 성인지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평등·성인지교육 강사들에게 배포하였음. 2016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3-2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 교육과정 | 교육내용(시간) | 대상 | 시기 | 강사 |
|----------------|---|--------------------------|----------------------|------------------------------------|
| 일반과정 (4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 성별고정관념 찾기, 젠더 감수성 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및 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및 필요성 - 정책 개선 사례 등 | 전 직급 공무원 (500여명) | ‘16.4.28-29 (10기) | 제주성별영 향분석평가 센터 연구원 및 컨설턴트 |
| 담당자과정 (4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및 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및 필요성 - 정책 개선 사례 분석 및 우수 사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실무 | 사업(과제) 담당자 (200여명) | ‘16.8.29-31 (5기) | 한국양성평 등교육진흥 원 강사 |

- 2016년 성인지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반과정과 담당자과정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책 사례 등 교육 콘텐츠는 특정 분야 및 사례에 한정되어 있어 각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성인지교육은 도움이 됐어요.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았는데, 그 정도면 양적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내용은 다 동의가 되는데, 실제 내 사업에 적용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교육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별 특성) 원인 파악도 어렵고, 개선안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실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수 사례도 도움이 되는데, 교육 때 보여준 사례들은 주로 복지(정책) 쪽이 많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나 주요 정책에는 어떻게 접근 해야 될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당장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성별분석평가 하는지 잘 모르고요. 우리 (제주) 지역에서 성별분석평가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다루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사례 8>

(성인지)교육도 도움은 되는데, 강의를 듣는 방식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 끼리 사례를 공유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 같고, 다른 개별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 분석하는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6>

-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들이 실제 사업에 적용이 용이 하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 워크숍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6.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성인지통계²⁷⁾는 ‘제주여성가족통계’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으로 발간되다가, 2015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되기 시작함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으나,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에 근거하여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3-2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생산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주여성가족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격년제로 발간 |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제17조 성인지통계) • 2015년부터 발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가족, 보육, 교육 등 10개 주요 분야와 시도비교 11개 분야 - 통계청의 원자료 분석 및 귀농인구, 가족형태, 국제결혼과 이혼, 다문화학생, 농어가 인구, 경력단절 여성, 안전 관련 지표 등 53개 신규 지표 추가 - 총 382개 통계지표 구성 |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관련 자료 즉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자료 등에 성별분리통계가 생산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자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수행 지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27) ‘성인지통계’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성인지통계는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양성 평등한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이와 같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 분리 자료 생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7. 소결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 기반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으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지역 자체적으로 제도 추진을 위한 독립된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둘째,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한 담당 인력(부서), 협의조정기구, 정책 개선 관리 체계, 성과 관리 등의 추진 체계가 미약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성인지정책에 관한 심층 분석 연구 및 컨설팅 지원 강화와 다양한 민간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운영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과제와 정책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질적 개선 및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1차 성과인 ‘제도 자체의 발전 성과(policy output)’는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제도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약한 지점이 많음
- ‘제도 자체의 발전 성과(policy output)’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궁극적 성과인 ‘성평등 실현 성과(policy outcome)’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제주 지역의 ‘제도 자체의 발전 성과(policy output)’가 보여준 많은 한계는 이후에 살펴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평등 실현 성과(policy outcome)’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실현 성과

1. 정책 개선 관리 실적
2.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3. 소결

1. 정책 개선 관리 실적

가. 2015년 정책 개선 관리 현황

- 이 장에서는 2015년(2016년 회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을 살펴보고자 함.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385개로 법령 215개, 사업 170개임
 - 법령 215개 중 ‘제외 대상’ 인 16개 법령을 제외한 199개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161개, ‘개선 의견’ 38개임. ‘개선 의견’ 38개 중 이를 수용한 과제는 24개, 불수용한 과제는 14개임
 - 사업 170개 중 ‘원안 동의’ 138개, ‘개선 의견’ 32개로, ‘개선 의견’ 으로 통보된 과제 중 이를 수용한 경우 26개, 일부 수용한 경우 2개, 불수용한 경우 4개 과제임

〈표4-1〉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현황

(단위 : 개)

| 구 분 ²⁸⁾ | | 총 계 | 법 령 | 계 획 | 사 업 | |
|--------------------|---------|-----|-----|-----|-----|----|
| 전 체 | | 385 | 215 | 0 | 170 | |
| 1. 제외대상 | | 16 | 16 | 0 | 0 | |
| 평가 대상 | 2. 원안동의 | 299 | 161 | 0 | 138 | |
| | 3. 개선의견 | 70 | 38 | 0 | 32 | |
| | 반영결과 | 계 | 70 | 38 | 0 | 32 |
| | | 수용 | 50 | 24 | 0 | 26 |
| | | 불수용 | 18 | 14 | 0 | 4 |
| | 일부수용 | 2 | 0 | 0 | 2 | |
| 4. 기타(중단 등) | | 0 | 0 | 0 | 0 | |

* 자료 : 2015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이를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가 ‘13년 87.1%, ‘14년 99.4%, ‘15년 81.2%로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음. 특히, ‘14년은 개선 의견이 한 과제도 없는 것이 특징적임

28) ‘제외 대상’은 분석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는 과제, ‘원안 동의’는 분석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개선안으로 충실하게 제시한 과제 또는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개선 의견’은 제출된 분석평가서 내용을 성평등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분석평가책임관이 정책개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 과제임

〈표4-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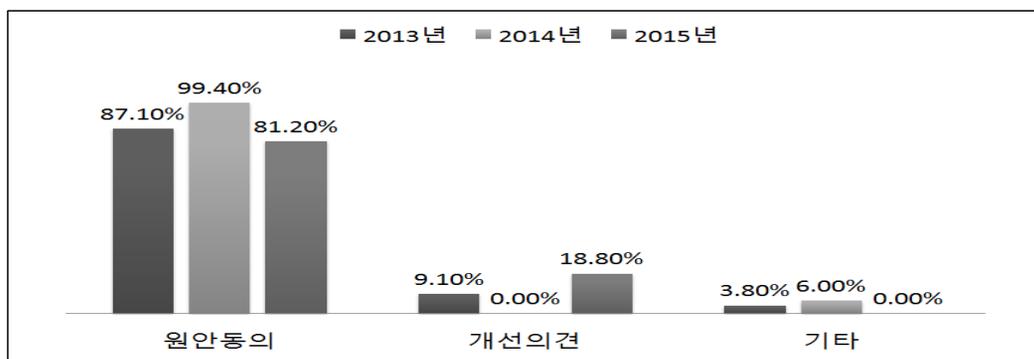
(단위 : 개,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전 체 | 132(100) | 168(100) | 170(100) |
| 제외대상 | 1(0.8) | 0(0) | 0(0) |
| 원안동의 | 115(87.1) | 167(99.4) | 138(81.2) |
| 개선의견 | 12(9.1) | 0(0) | 32(18.8) |
| 기타(중단 등) | 4(3.0) | 1(6.0) | 0(0) |

* 자료 :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결과보고서

〈그림4-1〉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2013~2015)

(단위 : %)



- 이처럼 '원안 동의'가 점차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기존 분석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전산시스템화됨에 따라 '개선 의견' 사업의 경우 과제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개선의견)반영결과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과에서 반영결과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총괄담당부서에서 대체로 '원안 동의'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분석(정영태·강창민·김지선, 2014)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산시스템인 GIA 시스템 활용 초기에는 과제담당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총괄담당자가 개선 의견이 있더라도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것임. 그러나 그 이전에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과정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분석평가책임관)가 자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총괄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

가센터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구한 뒤, 이에 근거하여 과제 담당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 동의'로 통보가 이루어졌던 것임

- 앞으로 각 사업 과제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성평등 조치 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한데, 큰 방향에서는 총괄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젠더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가 자문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젠더전문가 양성 및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개선 의견 수용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안 동의'과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정책 개선 성과로 '원안 동의' 과제가 제외된 '개선 의견' 과제의 개선 의견 수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방식이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함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개선 의견' 통보 과제 70개 중 52개(74.3%)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음. 그 중 '법령' 38개 중 24개(63.2%), '사업' 32개 중 28개(87.5%)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음. 특히, 사업의 경우 87.5%의 높은 개선 의견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4-3〉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수용률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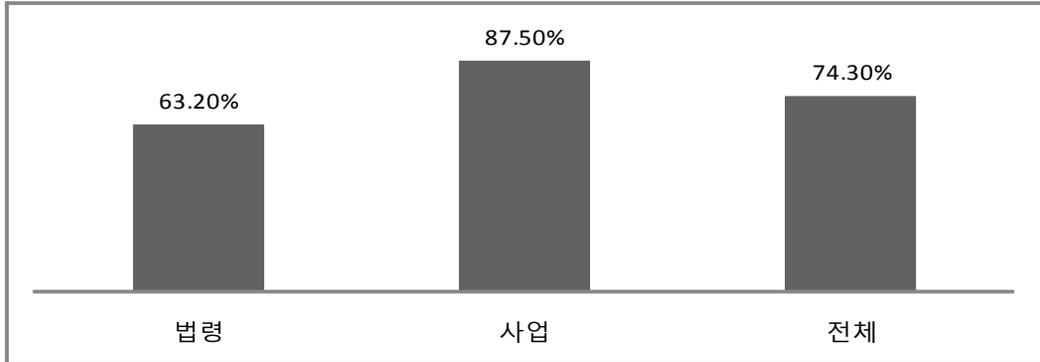
| 구분 | 과제수 | 원안동의 | 개선의견 | | 기타* |
|-----|------------|-----------|----------|----------|---------|
| | | | 개선의견 | 개선의견 수용률 | |
| 전 체 | 385(100.0) | 299(77.7) | 70(18.2) | 52(74.3) | 16(4.2) |
| 법 령 | 215(100.0) | 161(74.9) | 38(17.7) | 24(63.2) | 16(7.4) |
| 사 업 | 170(100.0) | 138(81.2) | 32(18.8) | 28(87.5) | 0(0) |

* 기타 : 제외 대상 과제임

29) 또한, 이는 통보된 개선 의견을 본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반영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후 반영 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 계획 반영 또는 실제 개선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4-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수용률

(단위 : %)



1) 법령

○ ‘법령’ 과제 중 개선 의견을 수용한 24개 과제의 개선 의견 수용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4-4〉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과제

| 구분 | 법령명 |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1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
| 2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
| 3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별 특성 |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5.11.18)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제6호(수강신청서)에 <u>성별란을 추가하여 성별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함</u> |
| 4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구성) ① 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개정 2015.12.31> |

| 구분 | 법령명 |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6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개정 2015.12.31.> |
| 7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 풍력발전사업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u>심의위원회를 구성함</u> : ' 15.12.23. * 위원회 구성 : 총 16명 (위촉 2명, 위촉직 14명 / 여성위원 6명, 42.8%) |
| 8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본 조신설 2015.11.4.] |
| 9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 성별 특성 | 제5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신청인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
| 10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u>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
| 1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u> ~ <개정 2015.10.6.> |
| 12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의2(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u>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지사 소속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 13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u>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
| 1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
| 15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

| 구분 | 법령명 |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16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별 균형 참여 |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명 변경)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및 위원 자격 기준 완화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주민자치위원) |
| 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19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0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2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 |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특성 |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성별 통계 개선 할 수 있도록 성별 구분 문항 추가 |
| 23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 제4조(구성)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 24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 제4조(구성)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 -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③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15.5.6.> |

- ‘법령’의 경우 개선 의견 반영 계획과 함께 바로 개선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 의견을 수용한 과제의 실제 반영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음. 2015년 개선 의견을 수용한 24개 ‘법령’ 과제 중 실제 개선 이행한 과제는 7개로, 대부분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반영한 것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개선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4-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개선 사례

| 구분 | 법령명 | 개선 내용 |
|----|---|--|
| 1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기록부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 2 |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주민자치위원) |
| 3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의 2(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도지사 소속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 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5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교육청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업

- ‘사업’ 과제 중 ‘개선 의견’을 수용한 28개 과제의 주요 개선 계획은 아래와 같음

〈표4-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과제

| 구분 | 사업명 | 주요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1 |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운영사업 | -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매뉴얼 개선 등) | 여성의 다양한 창업활동 및 경제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해나가겠음 |
| 2 |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제주학아카데미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홍보 강화 | 2016년 교육 프로그램 수행시 강사진의 성비균형과 참여자의 원인분석, 교육프로그램 홍보방식, 참여자 연령별 성별 현황을 분석하여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 3 | 도 어업수호대 활동 지원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홍보 강화 | ·2016년부터는 동 사업(캠페인, 세미나, 불법어업 예방 활동 등)의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개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타시도 협의시 참여, 각종 캠페인, 세미나 개최 시 여성어업인후계자 등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 등 추진 |
| 4 |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상담 | - 성별 요구 반영 및 성별 통계 생산 | 성별 통계 반영, 인터넷 중독군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 5 | 녹색구매지원 센터 운영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녹색구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사업, 친환경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시 남성들의 참여율 개선 예정 |
| 6 |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예산 반영 | 남성 위주로 활동 이루어지는 경향 있음.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 추후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7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홍보 강화 | 해양관련 스포츠는 남성의 스포츠로 간주됨. 따라서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등 적극적 홍보 등 개선 노력 |
| 8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예산 반영 | 향후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시 성별구분 통계 추가 등 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
| 9 | 제주도립미술관 미술관대학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예산 반영 |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및 요구사항 등을 접수, 조사하여 향후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참여하여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음 |
| 10 |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설명회 개최 | - 반영사항 선정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구 통계 현황 및 범죄 발생율, 우범지역 현황 등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설계됨 (반영) - 계획 2016년 사업 추진시 주민(여성)참여 독려 및 설명회 개최 만족도 조사 실시 |
| 11 |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육성 | - 위원회 여성비율 증진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안전문화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여성비율이 70%로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남성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단체 임원진 구성 비율이 남성이 높아 '위원회의 여성비율' 40-50% 할당 하는 방안을 강구 |

| 구분 | 사업명 | 주요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12 | 항만운영시설 유지비 | - 성별 차이 반영(지원체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 예산 반영 | 항만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하역업체 노무자와 자가용·화물차 운전자들이 주류 이용 하고 있으나, 최근에 여성 여행자들이 늘어나서 여성 전용화장실 부족 등으로 불편 초래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9월)에 화장실 1동 신축 예정임 |
| 13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2016년부터 사업 수혜 통계 명시하겠음. 수혜자를 학년별에 따라 사업진행 초반 접수 서류에서부터 성별, 학년별 분리하여 성별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지를 검토 |
| 14 |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 - 성별 통계 생산 |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음.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수혜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성별 통계 구축 (공모 시 성별 수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제출토록 하겠음) |
| 15 | 향토음식요리교실운영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예산 반영 | 교육대상자가 다문화가정 및 귀농귀촌이 대상이다 보니 제주도에 정착해서 적응단계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성보다는 여성비율이 높음. 따라서 교육 수혜자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교육계획 수립시 일정 남성비율을 포함하여 운영,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여성이 75%, 남성이 25%로 배분 조정, 점진적으로 남성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 16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예산 반영 | · '16년 귀농·귀촌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 30백만원 반영과 사업지침 수립시 일정부분 여성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 |
| 17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 - 설명회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 신규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중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순회설명회” 개최 예정 |
| 18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 예산 반영 | ·예산반영계획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추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성(임산부 및 유모차사용자), 장애인(휠체어, 시각장애인 등 포함), 노인(지팡이, 휠체어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적 무장애도시공간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코자 함 |
| 19 | 장애인가정도우미사업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 집계 |
| 20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 | -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 예산반영 | 제주지역의 특수성(감귤출하시기 노인일자리 누수현상)을 감안한 여성노인 일자리 모색 및 개발예산 반영 ·사업에서 일자리별(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 파견형 등) 성별통계가 없는 경우 향후 개별 통계 집계. 제주지역의 특수성(감귤 출하시기 노인일자리 누수현상)을 감안한 여성노인일자리 모색.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반영한 노인 일자리 모색 |

| 구분 | 사업명 | 주요 개선 방향 | 개선 계획 |
|----|-------------------------|--|---|
| 21 | 거주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예산 반영 | ·추후개선 사항으로 각 도서관의 배포분량을 15권에서 10권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외국인지원 민간단체(종합복지관등), 보건소, 한국어교육기관등)에 우선 배포함 ·거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 22 | 문화예술진흥원 유아놀이방운영 | - 사업운영시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운영 - 예산 반영 | 문화예술진흥원 유아놀이방 운영에 따른 유아는 여성위주의 보육형태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공영문화를 통한 기회제공을 하도록 개선, 놀이방 운영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채용 |
| 23 |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청년 여성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 |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운영지침 개정 : '16. 1월 중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참가인원 한도 증원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제고를 통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 24 | 종목별생활체육 교실운영 | - 성별 통계 생산 | ·성별 형평성 추후 반영 및 성별통계 구축 |
| 25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향후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시 남성 수강자 목표 비율을 정하여 남성 참여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 26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 -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적극적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 - 반영사항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15년부터 기존 주부 여성 위주에서 탈피하여 남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모니터단으로 개편되어 모니터단 선정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별 성별 안배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성별형평성을 반영한 사항임 - 계획 정책제안에 성별요구도 차이를 고려하여 차기 모니터단 구성시 남성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예정임 |
| 27 | 2015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지원사업 | - 수용 사항 (지표별 수정사항 반영) - 불수용 사항(홍보 다각화, 만족도 제고, 수용자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 지표별 수정 사항 반영 |
| 28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 불수용 사항(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등) | - 반영 사항 ·안전사고 취약대상(어린이, 노인, 여성 등), 직장인 등에 대하여 체험코스 마련 및 교육 기회 확대 ·체험 등을 위한 접근성 용이한 곳 설정 - 수용불가 사항 ·여성과 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성별 수혜 비율이 산출되어 약간의 격차가 발생할 지라도 수혜가 부족한 특정 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인위적으로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반영 불가 |

다. 개선 의견 불수용 과제

1) 법령

○ ‘법령’ 과제 중 개선 의견을 불수용한 14개 과제의 불수용 사유는 아래와 같음

〈표4-7〉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과제

| 순번 | 법령명 | 개선 방향 | 불수용 사유 |
|----|--------------------------------------|---------------|---|
| 1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2조(실무위원회의의 구성)에서 성별 균형이 고려 별도로 조항에 명시하지 않음 |
| 2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반영필요하나, 위촉대상이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현실적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위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 3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과 관련한 조항이 있기에 ‘해당 있음’ 으로 표기해야 하며,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개선 의견에 대해 미반영 |
| 4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 성별 특성 | 제2조2의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성교육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포괄할 수 있는 사항임) |
| 5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별 특성 | 제6조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보호아동을 지원하기위한 조항으로 성교육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포괄할 수 있는 사항임) |
| 6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 성별 특성 | 제8조는 입양기관의 종사자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교육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포괄할 수 있는 사항임) |
| 7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균형참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도로 조항에 넣지 않음 |
| 8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미반영 - 사유 : 도내 여성인력풀 부족 - 향후계획 : 추후 위원회 위원 위촉시 45%이상 여성위원 위촉 적극 검토 |
| 9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의의 구성에 성별균형참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도로 조항에 넣지 않음 |
| 10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의의 구성에 성별균형참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도로 조항에 넣지 않음 |
| 11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위촉직 위원을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위원을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 순번 | 법령명 | 개선 방향 | 불수용 사유 |
|----|------------------------|-----------------|--|
| 12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 성별 균형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균형참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도로 조항에 넣지 않음 |
| 13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별특성 | 확장형 또는 임산부, 어린이와 노인, 환자 등을 동반한 여성 및 가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는 조례로 제한하거나, 정할 수 없음 |
| 14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특성으로 개선 방향이었던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미반영. 관련한 실태조사는 건물의 위험과 노후도로 실시(내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님) - 성별 균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제10조(구성) 조항자체가 삭제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됨) |

2) 사업

○ ‘사업’ 과제 중 개선 의견을 불수용한 4개 과제의 불수용 사유는 아래와 같음

〈표4-8〉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과제

| 순번 | 사업명 | 불수용 사유 |
|----|---------------------|--|
| 1 | 제주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교육과정 | 본 과제는 2016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공감체험학교운영 사업은 2016년 사업에 미반영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
| 2 | 설문대할망페스티벌 | 수혜분석 어려운 사업이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별에 따른 예산 반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 |
| 3 |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 공모 사업별 세부 사업들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므로 성인직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분석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함. |
| 4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기반강화사업 | 〈성별영향평가〉 과제특성상 사업추진에 공정성과 시장논리에 입각한 자율경쟁 체계 입장에서 성별 형평성에 대한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2.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 지역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성평등 개선 계획 수립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편, 성평등 개선 계획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반영되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³⁰⁾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는 지금까지 성평등 개선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음³¹⁾

- 또한, '정책 개선 관리' 대상 과제는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 의견'으로 통보된 과제에 한정되어 있어, '원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 중 성평등 개선안이 적절하게 계획된 경우에도 정책 개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본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검토의견 통보서의 '원안 동의'를 '자체개선안 동의'와 '개선 사항 없음'으로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자체개선안 동의'의 경우에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음
- 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평등 개선 이행 성과를 살펴보았음

가.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 성평등 개선 이행 모니터링은 각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조치 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 모니터링 대상은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170개로,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 46개, 제주시청 73개, 서귀포시청 51개임
-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각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과 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분석, 담당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음

30)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3년에 처음으로 개선 계획 이행 점검을 시범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6년부터 개선 실적에 대한 2차 점검이 강화되어 2015년 사업뿐만 아니라 2014년 개선 예정 사업에 대한 개선 (이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음('16년 2월).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2월 종합결과보고서, 2015년 개선 예정 사업에 대한 개선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3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2014년 제1차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방안 모색)

- 특히,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4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정책 이행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음. 모니터링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4-9〉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모니터링 대상 |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70개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청 46개, 제주시청 73개, 서귀포시청 51개 |
| 모니터링 기간 | · 2016. 9월 ~ 2016. 12월 (4개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9월)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분석(10월) - 현장 모니터링 실시(11월)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12월) |
| 모니터링 방법 |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등 자료 분석, 담당자 인터뷰,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
| 모니터링 내용 | ·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 · 조치 사항 이행 수준 등 |

-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추진을 위해 성인지정책 전문가 자문회의와 모니터링단 워크숍을 통해 성평등 개선 이행 사항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함. 모니터링 지표는 단계별로 구성하였는데, 첫째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둘째,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 셋째, ‘성평등 조치 사항의 이행 수준’ 순으로 분석하였음. 지표에 따른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4-10〉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개선 이행 모니터링 지표

| 단계 | 지 표 | 분석 기준 |
|----|----------------|--|
| 1 |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 · 성평등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가? |
| 2 |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 | · 성평등 조치 사항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 3 | 조치 사항 이행 수준 | · 제시한 조치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가? 이행 수준은 어떠한가? |

나. 성평등 개선 이행 점검 결과

1) 성평등 조치 사항 유무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전체 170개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46개, 제주시청 73개, 서귀포시청 51개임. 첫 번째 분석 단계로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170개 과제 중 144개(84.7%)과제의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26개(15.3%)의 과제는 조치 사항이 없었음
 - 성평등 조치 사항 마련 유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서귀포시청 45개(88.2%), 제주특별자치도청 40개(87.0%), 제주시청 59개(80.2%) 순이나, 기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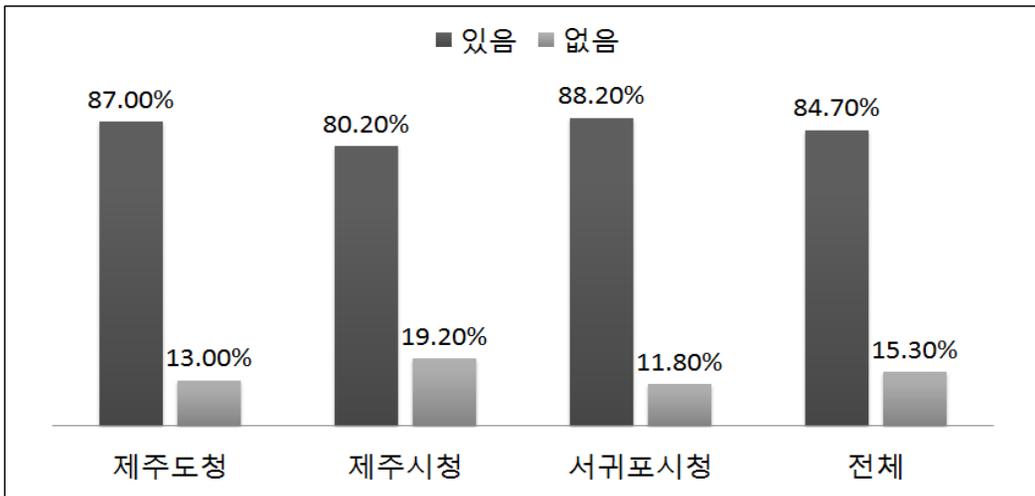
〈표4-1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전체 |
|--------------|----------|----------|----------|-----------|
| 전 체 | 46(100) | 73(100) | 51(100) | 170(100) |
| 성평등 조치 사항 있음 | 40(87.0) | 59(80.2) | 45(88.2) | 144(84.7) |
| 성평등 조치 사항 없음 | 6(13.0) | 14(19.2) | 6(11.8) | 26(15.3) |

〈그림4-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



2)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된 과제 144개의 성평등 조치 사항의 적절성을 살펴보았음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평등 조치 사항이 적절한 과제 44개(30.6%) 중, 제주특별자치도청 19개(47.5%), 제주시청 15개(25.4%), 서귀포시청 10개(22.2%)로 나타남
- 성평등 조치 사항이 부적절한 과제 100개(69.4%) 중, 서귀포시청 35개(77.8%), 제주시청 44개(74.6%), 제주특별자치도청 21개(52.5%)로 나타남

〈표4-1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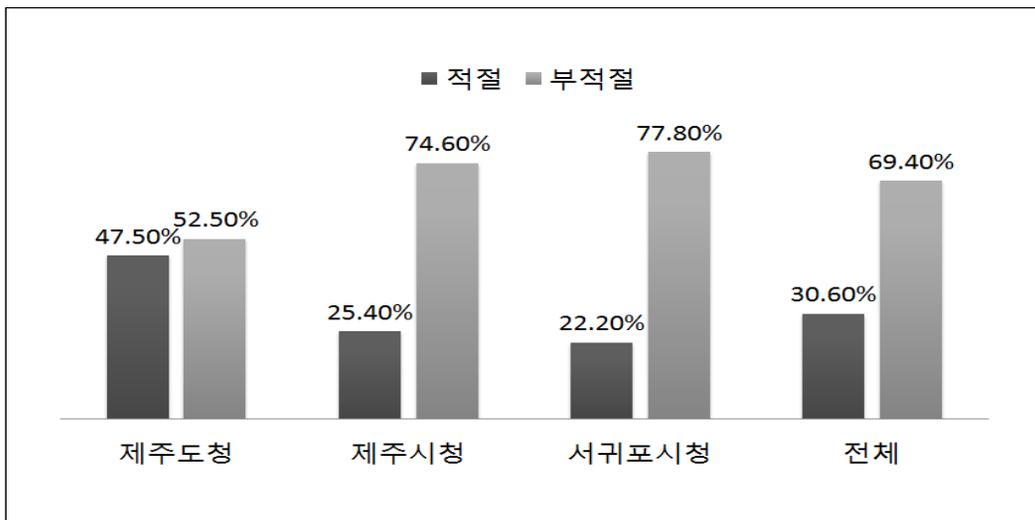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전체 |
|----------------|-----------|-----------|-----------|------------|
| 전 체* | 40(100.0) | 59(100.0) | 45(100.0) | 144(100.0) |
| 성평등 조치 사항 적절함 | 19(47.5) | 15(25.4) | 10(22.2) | 44(30.6) |
| 성평등 조치 사항 부적절함 | 21(52.5) | 44(74.6) | 35(77.8) | 100(69.4) |

* 전체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없는 과제 26개 제외

〈그림4-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단위 : %)



- 성평등 조치 사항이 부적절한 100개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평등 조치 사항의 구체성이 낮거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경우였음
 - 첫째, 성평등 조치 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41개(41%)로 가장 많았음. 예를 들면, ‘성평등하게 사업을 수행하겠음’,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성평등 목표와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참여자를 50대 50으로 설정하는 기계적 평등 의식을 보여준 경우가 31개(31%)였음. 예를 들면, 다수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고령의)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 참여자를 확대하겠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임
 -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정책의 수혜자는 65세 이상 고령의 정규직 직장이 없는 여성들로 이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 대상자(수혜자)를 둘러싼 성별화된 사회 환경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³²⁾
 - 셋째, 성평등 목표와는 상관없이 본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기재하거나 성별 차이(특성)나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 및 인식이 없는 몰성적 관점(gender-blind)³³⁾에서 성평등 조치 사항을 도출한 경우가 28개(28%)였음
 - 예를 들어,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성별 특성이나 차이를 도출할 수 없다거나, 성별 차이 또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임

32) 여가 문화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별화된 삶의 맥락(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성평등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성평등 수준은 2014년 현재 16개 시도 중 12위로 중하위이며, 세부 영역 중에서도 ‘여가시간성비’ 및 ‘여가 만족도 성별 격차’가 각각 13위 15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2014년 지역 성평등 지수 연구). 성별 격차가 크다는 의미는 성평등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제주 여성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줌

33)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평등으로 해석하는 경우(성 중립적), 결국 성별 차이나 성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무시하는 것(몰성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성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불평등 정책)(강경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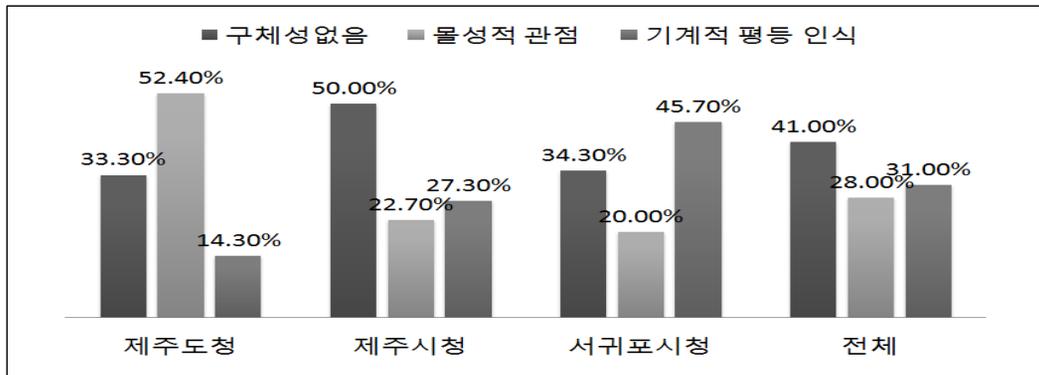
〈표4-1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전체 |
|----------------------|-----------|-----------|-----------|------------|
| 전 체 | 21(100.0) | 44(100.0) | 35(100.0) | 100(100.0) |
| 구체성 없음 | 7(33.3) | 22(50.0) | 12(34.3) | 41(41.0) |
| 물성적(gender-blind) 관점 | 11(52.4) | 10(22.7) | 7(20.0) | 28(28.0) |
| 기계적 평등 인식 | 3(14.3) | 12(27.3) | 16(45.7) | 31(31.0) |

〈그림4-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단위 : %)



○ 성평등 조치 사항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마련된 우수 과제 44 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디자인건축지적과의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사업)’ 과 균형발전과의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등 19개 사업임
- 제주시청은 공원농지과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관리과의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환경도서관의 ‘환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등 15개 사업임
- 서귀포시청은 마을활력과의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과 건설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천지동대천동성산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임

<표4-1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 과제

| 구분 | 기 관 | 부서명 | 사업명 |
|----|--------------|----------------|-------------------------------|
| 1 | 제주특별 자치도청 | 기업통상과 |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 운영 |
| 2 | | 여성가족과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등 교육 지원 |
| 3 | | 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
| 4 | | 수산정책과 |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
| 5 | | 생활환경과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 6 | | 산림휴양과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 7 | | 디자인건축지적과 |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 8 | | 안전정책과 | 안전문화운동시민단체육성 |
| 9 | | 기업통상과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 10 | | 균형발전과 |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
| 11 | | 균형발전과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
| 12 | | 디자인건축지적과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 13 |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 14 | |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15 | | 문화예술진흥원 행정지원과 | 문예회관 유아놀이방 운영 |
| 16 | | 평화대외협력과 | 평화아카데미 운영 |
| 17 | | 경제정책과 |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
| 18 | | 자치행정과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
| 19 | | 자치행정과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
| 20 | 제주시 | 공원녹지과 |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 21 | | 자치행정과 |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 |
| 22 | | 환경관리과 |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
| 23 | | 여성가족과 |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 |
| 24 | | 주민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25 | | 제주보건소 | 건강행복가족만들기사업 |
| 26 | | 도 세계문화유산재부 | 문화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도청으로 기관 이양) |
| 27 | | 환경관리과 | 쓰레기 분리 배출 청결지킴이 시범운영 |
| 28 | | 건설과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 29 | | 환경관리과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
| 30 | | 탐라도서관(한경도서관) |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 31 | | 위생관리과 | 음식점 창업 경영 컨설팅 사업 |
| 32 | | 안전총괄과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 33 | | 우당도서관(기적의 도서관) |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 |
| 34 | | 관광진흥과 | 가족프로그램 운영 |

| 구분 | 기 관 | 부서명 | 사업명 |
|----|------|--------|-------------------------------|
| 35 | 서귀포시 | 여성가족과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 36 | | 감귤농정과 | 1차 산업 포럼 운영(청정지역화 및 농촌어메니티개선) |
| 37 | | 천지동 | 주민자치센터 운영 |
| 38 | | 건설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 39 | | 서귀포보건소 | 흡연자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40 | | 체육진흥과 |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
| 41 | | 마을활력과 |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
| 42 | | 대천동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 43 | | 성산읍 | 주민자치센터 운영 |
| 44 | | 마을활력과 |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

3)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 성평등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작성된 우수 과제 44개 중 일몰된 사업 1개를 제외한 43개 사업에 대해 조치 사항 이행 수준을 살펴보았음
 - 먼저, 43개 사업 담당 부서로 부터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 와 증빙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음
 - 이후,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업무 담당자를 만나 실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였음
 - 최종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 사항의 이행 수준을 정리하였음

- 다음 표와 같이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 과제의 이행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43개 중 ‘이행’ 6개, ‘일부 이행’ 16개, ‘미이행’ 21개로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이 51.2%, 미이행 사업이 48.8%로 나타남
 -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이 36.8%, 미이행 사업이 63.2%, 제주시청은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이 57.2%, 미이행 사업이 42.9%, 서귀포시청은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이 70%, 미이행 사업이 30%로, 서귀포시청이 이행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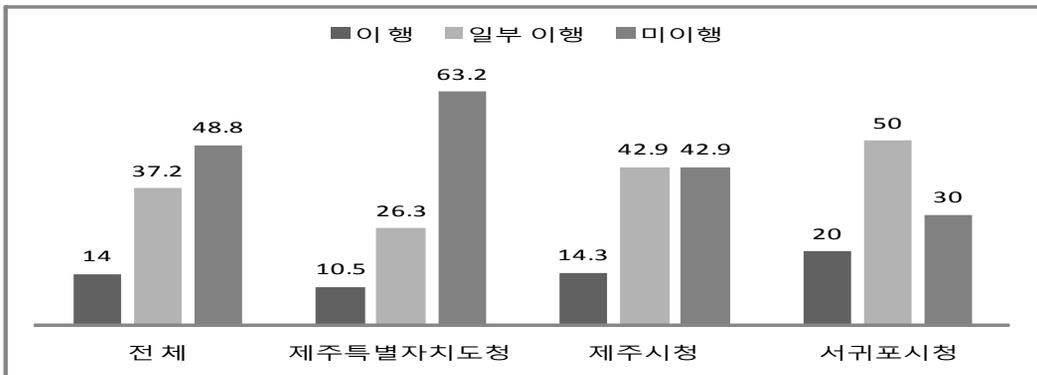
<표4-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 수준

(단위: 개, %)

| 구 분 | 이행 | 일부 이행 | 미이행 | 전체 |
|----------|---------|----------|----------|---------|
| 전 체 | 6(14.0) | 16(37.2) | 21(48.8) | 43(100) |
| 제주특별자치도청 | 2(10.5) | 5(26.3) | 12(63.2) | 19(100) |
| 제주시청 | 2(14.3) | 6(42.9) | 6(42.9) | 14(100) |
| 서귀포시청 | 2(20.0) | 5(50.0) | 3(30.0) | 10(100) |

<그림4-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률

(단위: %)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성평등 조치 사항이 비교적 적절하게 작성된 우수 과제의 정책 개선 이행률은 약 50%이지만, 이를 다음 <표4-16>과 같이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170개 사업 중 12.9%의 이행률을 보여, 전체 수준에서는 정책 개선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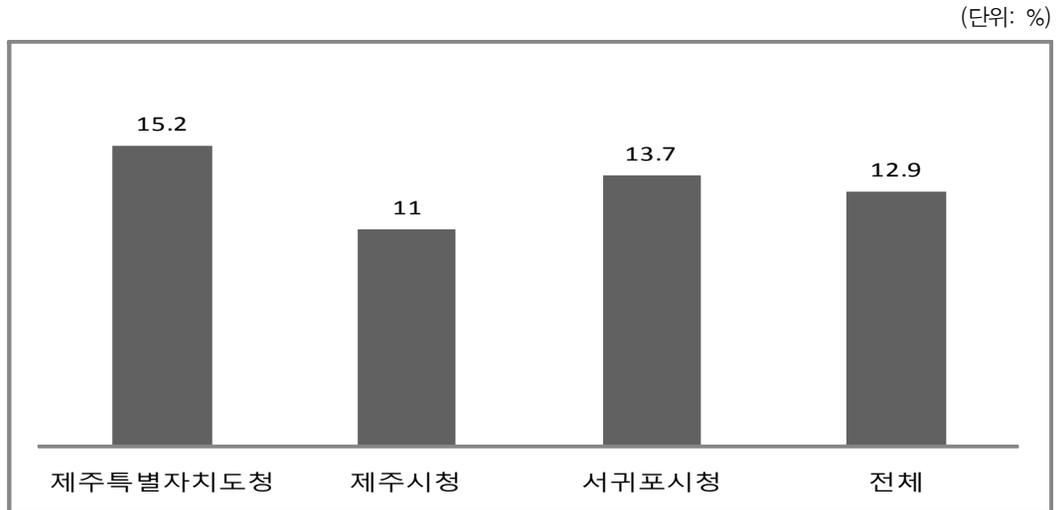
<표4-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단위: 개, %)

| 구 분 | 전체 사업 수(A) | 이행 사업 수(B) | 성평등 개선 이행률 (B/A*100) |
|---------|------------|------------|----------------------|
| 전 체 | 170 | 22 | 12.9 |
| 제주특별자치도 | 46 | 7 | 15.2 |
| 제주시 | 73 | 8 | 11.0 |
| 서귀포시 | 51 | 7 | 13.7 |

* 이행 사업 수 : 일부 이행 사업 포함

〈그림4-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이와 같이 2015년 전체 사업의 개선 이행률 12.9%와 2015년 전체 사업 중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 사업의 이행률 51.2% 간에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³⁴⁾ 이러한 차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작성 수준과 정책 개선 이행 수준 간의 상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한편, 정책 개선 이행 점검 작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행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성평등 조치 사항이 적절하게 작성된 우수 과제에 한 해 성평등 조치 사항 이행표 접수 및 현장 개선 이행 모니터링 등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과제 담당자들은 본인의 업무를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개선 이행을 위한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임
- 다음 표는 일부 이행을 포함하여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한 사업의 이행 사항을 정리한 것임. 주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시설 개선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개선 이행이 이루어졌음

34) 이러한 차이의 기관별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의 이행률보다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사업의 이행률이 높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경우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사업의 이행률보다 전체 사업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4-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항

| 기관별 | 부서명 | 사업명 | 이행 사항 |
|-------------|------------------|-------------------------|---|
| 제주특별 자치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 - 강사진의 성별 균형 개선과 성인지적 프로그램 지속 실시됨(제주여성의 삶 ‘해녀’, 의식주 등) |
| | 생활환경과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 주부 모니터링’ 사업을 ‘모니터링’ 사업으 로 개선함 |
| | 디자인건축지적과 |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다년도 계획 수립, ‘16년 대상 지역 선정 및 환경 개선 실시하였으 며, 지역 유관 기관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 제고 |
| | 균형발전과 |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 - 성별 만족도 조사 실시하였으나, 결과 분석 필요 |
| | 균형발전과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 - 개선안 이행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수행 기관 에 협조 요청함 |
| | 디자인건축지적과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 올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와 연속성 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만들기로 하였음 |
| | 평화대외협력과 | 평화아카데미 운영 | - 성별을 구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라고 위탁업체에 구두 개선안 전달함 |
| 제주시 | 공원녹지과 |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 안심벨, 기저귀 교환대 설치(중병 자료 보완 필요) - 여성배려주차 구획 등은 설치 안됨 |
| | 자치행정과 |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 | - 성별 만족도를 실시함 |
| | 여성가족과 |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 | - 프로그램 개선 실시 및 성별 만족도 조사와 결 과 분석 실시함 |
| | 제주보건소 | 건강행복가족만들기사업 | - 가족사랑 태교음악회와 임신부 및 신생아 건 강관리 프로그램에 남성 참여 유도하였음 |
| | 건설과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 여성위험지역에 가로등 설치함 |
| |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남성 참여 비율을 높임. 어린이 프로그램은 외부 체험 프로그램 이행 못하였음 |
| | 우당도서관 |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 | - 독서프로그램의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시행하 여 남학생 참여 제고하였고 여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
| | 관광진흥과 | 가족프로그램 운영 | - 아버지(남성) 돌봄 참여 제고를 위한 ‘로봇’ 및 ‘망원경’ 교실 운영 |
| 서귀포시 | 천지동 | 주민자치센터 운영 | - 야간 및 주말반 운영 등 운영 방식 개선함 |
| | 건설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 보조 단체와 협약하면서 개선 사항 구두로 알 림. 자전거 교실의 여학생 참여율 제고 노력. |
| | 서귀포보건소 | 흡연자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여학생 및 여성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이동금 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교육 실시하였음 |

| 기관별 | 부서명 | 사업명 | 이행 사항 |
|-----|-------|------------------------|--|
| | 마을활력과 |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 - 성별 특성, 특히 여성 귀농귀촌인의 특성 및 요구 반영 프로그램 실시. 여성 참여 제고함 |
| | 대천동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 야간 및 주말반 운영 등 운영 방식 개선함 |
| | 성산읍 | 주민자치센터 운영 | - 야간 및 주말반 운영 등 운영 방식 개선함 |
| | 마을활력과 | 제2회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 - 여성 참여 제고 노력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성평등 교육 실시하고 공문에 성인지예산사업임을 기재하여 참여 독려 |

다.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성평등 정책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한 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6개임. 서귀포시의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등 2개 사업, 제주시의 ‘가족프로그램운영’, ‘어린이상설프로그램’ 등 2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등 2개 사업임

1)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사업 개요

- 서귀포시의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사업”은 ‘서귀포시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이 주관하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기존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들이 남성이 다수로 구성된 지역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교육 대상을 사무장과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사항으로 교육 내용에 “성인지감수성교육”을 신설하였고, 관련 참석 요청 공문에 해당 사업이 “성인지정책(예산)” 사업임을 명시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이 사업은 2016년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지속사업’으로 2017년에는 교육 강사들의 성비를 균등하게 개선하겠다는 개선안을 마련한 상황임. 이처럼 연차

별로 성평등 개선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서도 사업 담당자의 성평
등 정책 개선 의지와 열정이 높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 | | | |
|----------------------|--|---------|-------|----------|-------------|-------|----------------------|--------------|
| 여성 참여율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2명 참석자 중 남성 49명, 여성 53명으로 여성 참여율 52% (작년 대비 12% 여성참여율 제고) | | | | | | | |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과목 신설하여 실시함 <table border="1" data-bbox="494 638 1172 860"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data-bbox="496 642 1169 676">교 육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6 676 1169 709">○ 등 록</td> </tr> <tr> <td data-bbox="496 709 1169 742">○ 제주의 역사</td> </tr> <tr> <td data-bbox="496 742 1169 776">○ 마을경제와 디자인</td> </tr> <tr> <td data-bbox="496 776 1169 809">○ 휴 식</td> </tr> <tr> <td data-bbox="496 809 1169 842">○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td> </tr> <tr> <td data-bbox="496 842 1169 860">○ 마을자원의 브랜드화</td> </tr> </tbody> </table> | 교 육 내 용 | ○ 등 록 | ○ 제주의 역사 | ○ 마을경제와 디자인 | ○ 휴 식 | ○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 ○ 마을자원의 브랜드화 |
| 교 육 내 용 | | | | | | | | |
| ○ 등 록 | | | | | | | | |
| ○ 제주의 역사 | | | | | | | | |
| ○ 마을경제와 디자인 | | | | | | | | |
| ○ 휴 식 | | | | | | | | |
| ○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 | | | | | | | |
| ○ 마을자원의 브랜드화 | | | | | | | | |
| 성인지정책(예산) 사업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마을 읍면동의 참석 요청 공문에, 성인지정책(예산) 사업임을 명시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V.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읍면동 : 읍면동 주무담당 및 담당자, 마을지역주민(리(통)별 2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바랍니다.↓ ※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각 마을회 사무장님 꼭 참석 토록 협조 바랍니다.↓ ○ 읍면동 마을활력과 담당자는 붙임 서식(명단제출)에 의거 10. 18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현수막은 서귀포시에서 자체 제작후 17개 읍면동 현수막 거리대에 게첨할 계획임.↓ </div> | | | | | | | |

※ 관련 사진



2)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업 개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도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사업은 제주학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제주 지역 전통 문화를 통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도민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임
- 기존의 이와 유사한 문화교육프로그램들은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교육강사와 프로그램 내용은 여성의 경험 및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해당 사업 또한 여성 교사 중심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강사진은 남성들이 많았음. 이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강사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진의 성비 균형 개선하여, 여성과 남성 강사 비율을 균등하게 개선하였고 교육 내용에 '제주 여성의 삶(해녀)', '제주의 복식', '제주의 음식' 등 제주 여성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였음 - 기간: 2016년 4월~10월 - 내용: 강좌 12강좌, 기행 2회 - 대상: 공무원 및 제주도민 |
| | 교 육 내 용 |
| | 제주의 선사유적 |
| | 제주의 무속신앙 |
| | 제주의 민요 |
| | 제주의 말문화 |
| | 탐라순력도 기행(남부) |
| | 제주의 사찰 |
| | 제주의 복식 |
| | 제주의 음식 |
| | 제주의 원도심 도시재생 |
| | 제주여성의 삶(해녀) |
| | 제주의 동과 서 |
| | 탐라순력도 기행(서부) |
| | 제주의 지질 |
| | 제주의 동물 |

※ 관련 사진



3)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 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의 “환경개선디자인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이 협업하여 구 도심 취약 범죄 취약 지역에 CPTED³⁵⁾를 적용함으로써 범죄 사각 지역 최소화 및 안전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다년도에 걸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함. 첫 단계로, 2014년 도내 범죄 취약 지역 6개 지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범죄 예방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음
- 범죄 예방 기본 설계에 따라 대상 지역인 6개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2015년까지 ‘제주시 무근성 일대’와 ‘서귀포 중앙교회 일대’ 2 지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제주시 일도2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이행하여 2019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³⁶⁾
- 특히, 2016년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 주민과 경찰청 등 공공

35) CPTED(Crime Prev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건축물 등 범죄 예방형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말함

36) 사업 담당자 전화 인터뷰(2016.12.15)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선정 지구'로 '제주시 일도2동'을 선정하였음. 이후, 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설명회를 3회 가량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p>범죄 예방 기본 설계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 • 대상지 : 도내 6개 지역(일도초등학교, 삼도2동 남성 마을, 서초등학교, 이화오피스텔, 서귀포 시민회관, 서귀동 중앙교회 일대)   |
| <p>지역 유관 기관 및 지역 주민 참여 제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각 읍면동주민센터 협력 회의 및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업무 협의 • 주민 설명회 개최 • 사업완료지구 주민만족도 조사 및 사전조사 실시(서귀포시 정방동, 제주시 일도이동) |
| <p>성인지적 시설 및 환경 개선</p> | <p>CCTV</p>  |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 | LED 보안등 |   |
| | 파고라 |   |
| | 벽화 및 스탬프 |   |
| | 트리아트 스탬프 |   |
| | 비상벨 등 |   |

4) 가족프로그램운영(제주시 관광진흥과)

□ 사업 개요

- 제주시 관광진흥과(별빛누리공원)의 “가족프로그램운영”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자녀의 창의적·과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가족애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시행됨
-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의 다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 중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부모의 성별과 상관없이 일과 가족의 영역을 양립하고 돌봄 역할 수행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아버지 또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프로그램에 아버지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로봇’과 ‘망원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설, 아버지의 참여를 높여 아버지의 자녀 교육 및 돌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돌봄 참여 제고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로봇 제작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6년 6월 ~9월 (목, 금 19시 30분 ~ 21시/4기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반, 초등학교 4~6학년 반 ② 우리 가족 별빛 탐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6. 10. 25~11.1(매주 화 9시 30분 ~ 21시) - 대상 : 초등학교(1~6학년)자녀를 둔 가족 - 내용: 망원경 탐험(각 부위 이름, 조립), 별빛 탐험(별 색깔, 밝기, 거리), 망원경 작동 체험(별 체험) |

※ 관련 사진



5)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사업 개요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의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

그램을 통해 정착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함

- 2014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964명 중 여성 699명 (36%), 남성 1,265명(64%)으로 남성이 보다 많으며, 사업수혜자 또한 전체 231명 중 여성 98명(42%), 남성 133명(58%)로 남성이 많음.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로만 보면 여성 수혜자 비율이 남성 수혜자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개 귀농귀촌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 귀농귀촌인의 경우 보조 농업인(노동자)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있어 여성 귀농귀촌인에 대한 일자리 및 자립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사업은 여성 귀농귀촌인의 교육 수요를 파악한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여성 교육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여성 귀농귀촌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여성 참여율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교육 참여율: '13년 41% ▶ '14년 42% ▶ '16년 50% |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지원 - 교육 내용: 퀼트, 천연염색, 천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 블로그 교육 등 |

※ 관련 사진



퀼트교육

블로그교육

6) 어린이상설프로그램(제주시 우당도서관(기적의도서관))

□ 사업 개요

-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의 “어린이상설프로그램” 사업은 ‘어린이들의 독서생활화와 건전한 여가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도내 취학 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관련 상설프로그램임
-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정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부모 중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등 성별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기적의 도서관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독서와 연계한 클레이놀이 및 실험과학 놀이, 독서 캠프 등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독서프로그램에 남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학생들에게도 신체 놀이의 경험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 정책 개선 내용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 | | |
|--------------|--|--|-----|------|------------------------------|-----------|--------------------------------------|
|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중심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상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여름방학 특강 : 9개 프로그램, 69회 운영, 1,212명 참여 -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20개, 129회, 2,467명 참여 - 프로그램 내용 : 클레이놀이, 실험과학놀이, 논리적 사고와 보드 게임, 그림책 속 독서논술, 어린이 독서 스피치 등 • 주말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어주는 시니어 : 78회, 2,340명 참여 - 주말 가족극장 : 88회, 3,520명 •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하룻밤’ 어린이 독서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6. 9. 23. ~ 9. 24 - 참석 : 초등학교 4~6학년 50명(남 23명, 여 27명) - 장소 : 기적의 도서관 - 내용 : 팀별체험코너, 도전 슈퍼스타 등 <p>* 주요 프로그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는마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별모임 (조별나누기, 이름표배부, 조별소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팀별 체험코너참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작은 음악회/연극 - 책속의 전래놀이 - 간식복불복</td> </tr> </tbody> </table> | | 내 용 | 여는마당 | 조별모임 (조별나누기, 이름표배부, 조별소개) | 팀별 체험코너참여 | - 작은 음악회/연극 - 책속의 전래놀이 - 간식복불복 |
| | 내 용 | | | | | | |
| 여는마당 | 조별모임 (조별나누기, 이름표배부, 조별소개) | | | | | | |
| 팀별 체험코너참여 | - 작은 음악회/연극 - 책속의 전래놀이 - 간식복불복 | | | | | | |

| 구 분 | 성평등 정책 개선 내용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70%;">내 용</td> </tr> <tr> <td></td> <td>-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 걱정인형 만들기 우리 조를 소개 합니다</td> </tr> <tr> <td>불빛축제</td> <td>팀별 재능을 통하여 협동심과 창의력 개발</td> </tr> </table> | | 내 용 | | -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 걱정인형 만들기 우리 조를 소개 합니다 | 불빛축제 | 팀별 재능을 통하여 협동심과 창의력 개발 |
| | | 내 용 | | | | | |
| | | -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 걱정인형 만들기 우리 조를 소개 합니다 | | | | | |
| 불빛축제 | 팀별 재능을 통하여 협동심과 창의력 개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적의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16. 9. 1. ~ 12. 30(매주 수, 목, 금) - 참석 : 유아, 초등학생 - 장소 : 기적의 도서관 - 내용 : 도서관 이용 방법 교육, 도서관 자원활동가 ‘책나라 지킴이’ 와의 만남 등 | | | | | | | |

※ 관련 사진



3. 소결

○ 이 장에서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성평등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개선 이행 성과를 살펴보기 어려우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개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정책 개선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개선 관리 실적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개선 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이행 점검을 통해 성평등 개선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과 과제 담당자로 부터 성평등 개선 이행 표 접수, 현장 개선 이행 점검 모니터링 등을 병행 실시하였음. 이러한 과정은 과제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라는 사실과 본인이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평등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낳았음
- 그 결과 전체 170개 사업 과제 중 일부라도 이행한 사업 과제가 22개로 12.9%의 정책 개선 이행률을 나타냈고 그 중 6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정책 개선 이행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성평등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제고 방안

- 이상의 성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미약하여 결과적으로 제도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인 성평등한 정책 실현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제주 도정의 성평등 비전 및 목표 수립

- 그 동안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간과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현재 제 5차 계획(2015년~2017년)을 수립하고 있음.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양성평등한 사회 참여’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함. 이에 따른 정책 과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와 강화’, ‘성인지제도 운영 내실화와 추진 역량 강화’, ‘여성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 확대’ 등임³⁷⁾
- 2017년은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연동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비롯하여 각 정책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정책 영역별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동

37) 이에 관한 세부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기능 및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정책 목표, 주요 업무계획, 중장기 계획 등에 성평 등 가치와 비전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나. 담당 기구 위상 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전담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계로, 담당 기구의 위상이 낮고 전담 인력이 없어 제도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국의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위촉하거나 전문직위제를 활용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나가는 추세임
- 제주 지역 또한 담당 기구를 '양성평등국' 또는 '성평등기획관실' 등으로 개편하여 담당 기구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고, '전문직위제'를 활용·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분석평가서 검토 및 정책 개선 사항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공무원 중 젠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관련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강화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 조정 기구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구성되었으나 2016년 현재까지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음. 향후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어도 분기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기본 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주요 추진 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함. 2016년 12월 현재, 1기 위원의 위촉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새로 정비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젠더 전문가 등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위원으로 확충하는 등 젠더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위원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제주양성평등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각 실국의 국장

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조직 위상이 높음. 따라서 제주 도정의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 실국장의 참여 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대상 과제 선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해나가야 할 것임

라. 다양한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사회 성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제주 지역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운영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지역의 젠더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임
- 현재는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성인지정책 컨설턴트가 중심이 되어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앞으로 성인지 정책에 관한 보다 심화된 논의와 작업 - 성인지정책 관련 심층 분석 및 연구, 대상 과제 선정, 정책 이행 모니터링, 컨설팅과 교육 등 - 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의 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주축로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거점 기관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마.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마련

-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면, 민관이 함께 하는 과제선정위원회(간담회)가 주축이 되어 대상 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담 부서에서 대상 과제를 확정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과제담당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준과 상관없이 대상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지침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수혜 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둘째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 셋째 수혜 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한 정책임.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

과 사업 즉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성평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거나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과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 제주처담(이하, ‘제주처담’)³⁸⁾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 검토 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 검토 제도’란 도지사의 결재를 받는 주요 사업의 결재 서류에 성인지 검토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제도로,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연동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계획과 주요 사업 중심의 제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바.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 마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관리는 사업 계획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실제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과제 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단지 보고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몇몇 개선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의 성 평등한 정책 개선 점검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우선,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 제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작업은 분석평가책임관(기관 담당)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이를 위해서는 각

38)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 제주처담’은 제주 도민의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프로젝트로 추진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젠더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따라서 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인력 배치와 젠더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성평등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행 점검은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데, 우선은 상반기에 성평등 조치 사항이 본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9-10월 경)에 실제 개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단계에서 정책 개선 이행 점검 작업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집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 기관 및 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사.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반영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제 담당 공무원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번거롭고, 귀찮으며,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에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이행률을 부서장 BSC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실제 과제 담당자에 대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임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서장뿐만 아니라 과제 담당자의 업무를 성과 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 및 자체 예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인지정책은 주류의 일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로, 공무원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도 그 개념이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기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한다는 것은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 전문가인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인 연구자와 활동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제주 지역의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컨설팅과 성인지교육이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실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가지고 상호 소통식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화식 교육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와 성인지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함.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및 성인지교육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젠더 거버넌스 운영, 정책 개선 모니터링, 성인지정책 심층 분석 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예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제주 지역에서 5년 만에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 분석 연구로, 이전 연구와의 차별점이자 본 연구의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개념화하고 분석 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1차적 성과인 '제도 자체의 추진 성과'와 정책 개선 이행 점검을 통한 '성평등 실현 성과'를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음

- 또한, 2010년에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 분석틀을 활용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법 제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2015년에 이루어진 타 지역의 성과 분석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추후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은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이를 통해 소수이지만 개선 이행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성평등 실현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평등 개선 성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수준’ 및 ‘성별 만족도’ 등을 반영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현재 제주 지역의 제도 추진 역량의 한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성과 분석 시에는 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성과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강경숙(2016),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 강사 지원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민선(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분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민선손태주(2015), 「2015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강현아고보혜박주희(2012),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환류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강현아손주라나현정(2016),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정책개선 모니터링」, 광주여성재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4),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분석」.
- 고지영·강대옥·문순덕·김민선(2014),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5~20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경화·양애경·문유경·김둘순·송치선·남궁윤영·박기남·류연규(2010),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화·김둘순·최유진·장윤선·문희영·박기남·장정순(201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V)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화·유희정·김둘순·이솔(2015),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화·남궁윤영·동제연·주경미·이은경(2015),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둘순·최유진·송효진·이선민(2014),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철(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희경·강전화·임정규(2015),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인지예산 사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김희경·백희정·김효경(2013), 「2013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모니터 사업」, 광주여성재단·광주여성민우회.
- 노채영(2015), 「광주지역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사례 연구」, 광주여성재단.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운영)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문옥희·박경애(2014),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실태와 환류 활성화 방안」, 전남여성플라자.
- 박홍주·한미경(2015),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사례」, 인천여성가족재단.
-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2015), 「지역 젠더 이슈 발굴 사업 보고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손문금·서정우·전향숙(2015),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영숙·김선화·노경혜·이원형(2015), 「2014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행 현황 이행현황 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b),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c),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유정미(2009), “성 주류화와 젠더 문제”, 이재경 역, 『국가와 젠더』, 한울.
- 윤연숙(2015), 「인천시 및 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 윤연숙·박홍주·한미경(201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곤수·이정마·최준승(2014),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사례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이영석(2014), 「경상북도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임우연(2015),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 - 2014년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임우연·이경하(2015),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 - 충청남도 사업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재경·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 「한국여성학」, 28(3): 1-33. 한국여성학회.
- 정영태·김영란·홍수연(2008), 「200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정영태(2010),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201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창민·이슬·김지선(2012), 「2012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영태·강창민·김지선(2013), 「2013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영태·강창민·김지선·강혜경(2014), 「2014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2016), 「2016년도 교육훈련 계획」.
- 조연숙·오나경(2013), 「서울사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집」, 서울여성플라자.
- 조혜경·손은성(2014), 「충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환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 허미영(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알기 쉬운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인 현혜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소 디자인늘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13-6